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6년 9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한정애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사회 :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토론 4 부록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판례 요약	51
토론 3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47
토론 2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국장)	44
토론 1	이철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43
발제 2	뇌심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권동희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개선방안 공인노무사)	25
발제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과로 평가, 이혜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평가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혜은

1. 들어가며

- 업무상 재해,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노동자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임.
- 201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발표된 통계상 11.2%로 낮은 수준임. 업무상질병에 한정할 경우 패소율은 11.7%로 유사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경우 오히려 더 패소율이 높아 13.6%임¹⁾.
- 그러나 공단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상재해/질병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2012년 375건, 2013년 446건, 2014년 586건에 달함. 이를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4년 기준 46.6%로 확대됨²).
- 2014년 기준 패소 사건 185건과 취하 사건 586건 총 771건의 사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이와 같은 경우 인정을 받기까지 소송을 위한 비용부담과 시간의 소모,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를 입게 됨.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서 불승인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노동자만이 행정소송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불공정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한 폭넓게 업무상질병을 인정하여 행정소송 판단과 의 간극을 좁히고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

¹⁾ 근로복지공단. 공정한 소송 수행을 위한 2014년도 소송상황 분석. 2015

²⁾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소송남용 규제해야. 2015년 6월 1일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업무상질병의 인정에 있어서 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2. 대상 및 방법

1) 검토 대상 사례

2015년 행정소송 중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건 43례에 대한 판결문

- 2) 검토 방법
-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질병의 특성, 업무관련 특성 등 주요 항목을 계량화 함
- 법원의 업무상질병 인정 근거를 각 사례마다 정리하여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판단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
- 연구진 토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평가/판단의 문제점을 추출

3. 사례 검토 결과 및 개선방안

- 1) 과로 평가
- ① 업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휴식/대기시간도 제외한) 직접적인 근로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비해 법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행하여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업무로 인정할 수 있음

사례 16

[사례 개요]

제약회사 영업직, 48세 남성으로, 2012년 4월 28일(토) 10:30분 경부터 거래처인 병원의사 및 직원들과 등산, 약 40여분 후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12:00경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12:45 급성관상동맥증후군(추정)으로 사망. 2008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투약중인 기존의 심질환자. [근로복지공단의 심의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u>주말 산행은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어</u>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다고 판단되며,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기존 질병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인 발생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심사 기각, 재심청구 기각.

[판결문 요지]

1) 망인은 영업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거래처인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의 재해일에 함 께 등산에 참여하였던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모 병원이었고 이 사 건 회사측에서는 망인만이 참석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일에 있었던 등산 은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망인 이 주말에 거래처 병원의 의사 또는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비용이 충당되었다. 3) 망인은 주중에는 오후에 거의 매 일 거래처 병원으로 출장을 다녔고 특히 주 1-2회 부산, 광주, 대전에 소재한 병원을 방 문해야 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도 휴식 을 취하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비 록 망인이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항고혈압제, 협심증 치료 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본인의 질환 을 잘 관리하여 왔다. 5) 망인의 주치의 및 00병원의 의사 역시 망인의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이 사망 직전까지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질환이 있는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겪는 경우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22

[사례 개요]

- S중공업 소속 53세 노동자로 2013.5.27 10:00경 협력업체 면담 중 입이 돌아가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우측편마비, 실어증 진단.
- 납품업체(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로,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과 납기를 점검하는 일. 창원, 김해, 울산, 부산에 위치한 15개 업체를 관리. 출장 후 퇴근하여 사내전산망에 접속하여 출장결과 보고. (발병전 12주간 출퇴근 포함 평균 1일 이동거리 173km.)
- 근무시간은 08:00-17:00였으나. 발병전 1주 59시간 21분, 발병전 4주간 60시간, 발병전 12주간 57시간 50분. (피재자 측은 주당 70시간 이상이라고 주장)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기성 또는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 [판결문 요지]

- 노동부 고시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한 장시간 근로에 해당.
-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와 협력업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의 출퇴근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일부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 노동시간은 과로의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을 고려할 때 계약된 순수한 노동시간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인정할 필요 있음. 영업을 위한 접대, 출장이 주 업무인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등다양한 사례에 대해 업무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폭넓은 해석 필요

② 교대근무/야간노동에 대한 고려

- 교대근무/야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주간근무만 하는 것에 비해 큰 부하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절대적인 노동시간만을 따지는 것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함.
-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서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확인됨

[참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7.1., 일부개정]

-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 요한 사항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

- 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 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2) <u>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u>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례 20

[사례개요]

- 2013.6.4 21:20경 작업장 내 철선외장기에서 외장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쓰러져 뇌출 혈을 진단받고 업무상재해로 요양승인 신청.
- 원고는 발병 당시 배전케이블 생산팀에서 근무하면서 2012.1.1부터 배전케이블 연합 공정 및 부식방지 외장공정의 두 가지 공정을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숙련된 기능공으로 두 가지 공정에 대해 작업과 품질관리(감독)를 동시에 수행했음.(두 가지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자였음) 원자재 투입 및 잔량 소요량 감시, 설비 이상 유무확인, 전체 공정확인 업무를 하였는데, 생산 제품의 특성상 기계 규모가 방대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두가지 공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
- 3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3.5.4(발병 한달전)부터 2교대(1주일마다 순환)로 바뀌면서 11.5시간 또는 12.5시간 근무. 발병전 12주간 평균 47.5시간/주, 발병 전 4주간 62.1시 간/주.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개인병력(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해당되는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승인.

[판결문 요지]

-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했다고 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2.1시간으로 64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야간근로시간의 비중이 매우 크고 2교대 기간 동안 야간근로의 증가 폭도 크다는 점, 야 간근무의 경우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점 등을 인정.

-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장기간은 아니지만 2교대근무가 3교 대 근무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 교대근무와 야간노동은 주간노동만 하는 것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고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뇌심혈관계질환과의 관련성도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전체 노동시간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야간노동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질적인 고려는 일관된평가를 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음 (예, 최근12주간 노동시간을 계산할 경우 야간노동시간은 30% 가산하여 계산)

③ 대기시간/휴식시간의 평가

- 직종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작업 공정 상 불가피하게 대기시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주로 경비직/운전직에 해당됨. 경비직의 휴식시간/수면시간의 경우 보통 휴식을 취하기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정해진 장소에 구속되어 있고 휴식시간 중이라도 민원/사고의 발생시 이 를 처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뚜렷한 지침 없이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사례 36

[사례 개요]

29세 남성으로 2009. 8. 31. 여행사 버스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 및 관광버스 운전을 하였고 2009. 11. 28. 21:00경 회식을 하고 익일 01:30분경 귀가 중 쓰러진 이후 03:05분경 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 급성심근경색.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이 <u>평일 4시간30분에서 5시간 가량 버스를 운행하고, 주말에는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휴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짧아 노동강도 및 전반적인 과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u>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인 당뇨 등에 평소 생활습관인 흡연이 더해져 기존 질병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운행일지에 근거하여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운행시간만을 노동시간 으로 인정함.

[판결문 요지]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 그 중간에도 차가 배차되면 운행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일 뿐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발병 5주전부터 주말근무 (5주간 휴무 2일) 한 점으로 인해 상당한 과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사례 37

[사례 개요]

- 53세 남성, 1200명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1. 아침 출근하여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짐. 다음 날인 2012. 9. 22 아침 교대근무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9. 29.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중간사인 고도의 뇌부종, 직접사인 뇌기능 상실로 사망함.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 재해발생 전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도 없었고, 입사이후 과로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건강검 진내용상,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의심, 고혈압 진료 확인, 흡연 및 음주를 해 온 것을 들 어 불승인. 심사, 재심사 청구 모두 기각.

[2심 판결문]

"망인은 다른 1명과 2교대로 24시간 동안 격일제로 발병 전 4주간 238시간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발병 직전 다른 1명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하여 2012. 9. 19. 및 2012. 9. 21. 등 2일간 9시-11시30분 및 14시-17시15분 까지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러한 경위에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던 휴게실 주변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시간 산정에 있어서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통 업무 중대기와 (정해진 사업장내 장소에서의) 휴식은 해당 작업의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 전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의 과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임. 관련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대기시간/휴식시간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음. (예. 대기시간/휴식시간의 50%를 노동시간으로 인정)

④ 휴일부족/연속근무에 대한 평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성과로의 평가에 있어 12주간의 총 노동시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음. 법원의 판결에서는 정해진 휴일이 없이 상당기간 연속근무가 있을 경우 과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사례 33

[사례 개요]

- 만 45세 남성으로, 2010. 12. 29. 조경회사에서 입사 후 2011. 6. 24. 작업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소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뇌연수마비로 2011. 7. 1. 사망.
- 발병 전 26일을 외딴 섬에서 조경공사 반장업무로 인해 연속근무(근무시간 : 07:00~17:00)하였으며, 이 중 11일은 연장근무(19:00~21:00)까지 함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망인은 조경수 식재작업을 지휘, 감독하여 일반 작업자들과는 달리 가끔 나무심기 등을 하여 육체적인 노동강도는 낮았으며 <u>발병 전날인 23일은 오후 작업이 없었고, 22일에도 우천으로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u> 발병전 24시간 중에서 23일 이후에는 우천으로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다"

[2심 판결문]

"1) 망인이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20여년간 조경업무에 종사해왔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 외딴 섬에서 26일간을 정상적인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점, 2) 특히 위 26일 중 11일 동안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2011. 6. 24. 당시에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상당히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3) 망인은 잦은 우천과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 더하여 연장된 공기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망인은 2010년 2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아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만성과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전체 노동시간의 길이 이외에도 노동시간과 휴일의 배치 문제는 과로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휴일없이 연속적으

로 근무한 것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음. (예, 월 2일 이하의 휴일은 만성과로로 본다)

⑤ 노동시간 이외 업무량 평가 지표의 인정

- 과로에 대한 평가는 노동시간 뿐 아니라 단위 노동시간 동안의 업무량 즉, 노동밀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는 인력의 감축, 물량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가 가능하며 특히한 개인의 노동밀도의 변화는 업무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함.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시간 외의 업무량 지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업무의 증가를 인정하는 경우 있음.

사례 8

[사례 개요]

55세 남성, 2000년 지하철업체에 입사, 2006년부터 차량검사 파트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3조 2교대 근무 시행. 2011. 12. 26.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 내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경동맥의 협착에서 기원한 뇌경색" 진단 받음. 사건 당일(12. 26) 동료1인과 함께 20건의 입환업무 수행. 10월 평균 2.7건, 11월 평균 2.2건, 12월 평균 4.7건에 비해 4-5배 늘어난 작업 수행 직후 사건 발생함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u>발병 당일 평상시에 비해 업무량의 증가는 있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u> <u>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u> 내경동맥기시부 폐쇄는 만성적으로 진행된 병변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2심 판결문 요지]

평소보다 4-5배 입환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연동된 다른 업무 역시 증가, 고도의 주의력과 시간 내에 입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 매우 추운 날씨, 장기간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함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뇌경동맥 폐색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 인정

사례 15

[사례 개요]

2011.11. 1. 수상운수업 회사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 2012년 10월 27일(토) 출근 후 정상근무하였으며, 퇴근 시간이 지나도 피재자가 돌아오지 않자 유족이 23:00경 경찰서에

신고, 가족들에 의해 다음날인 28일 01:00경 피재자가 평소에 일하던 쓰레기분리작업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뇌출혈' 진단 받고 수술 및 치료 중 31일 같은 원인(뇌출혈)으로 사망함.

*유람선탑승객 수: 9월 평균 154명/일->10월 평균 442명/일. 재해당일 (10월 27일) 873명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지 아니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 였다

[판결문 요지]

1) 망인은 E의 F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업무를 도맡아 담당하면서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의 급증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망인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을 앓고 있었으나 꾸준히 치료받으며 충실히 관리하고 있었던 점, 3) 망인이 과로한 상 태에서 비를 맞으며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자발 성 뇌출혈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특히, 무거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자 체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망인이 빗길에 미끄러지면 서 돌발상황에 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역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외적인 요인이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5) 망인이 뇌출혈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 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6) 망인은 근무지에서 업무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음에도 사업주인 E측으로부터 구호받지 못한 채 방치 되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 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사업 주의 관리소홀 등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다.

-> 노동시간의 변화는 크지 않더라도 노동의 밀도가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이외에 물량, 처리건수, 인력감축 등의 다른 지표 역시 고려할 필요 있음. 특히 물량과 같은 객관적/정량적 지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성과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⑥ 만성적인 과로 상태를 '적응'상태로 평가

- 만성과로의 개념은 이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만 치우쳐 장기간 힘든 일을 수행한 점은 '익숙해졌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음.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와 같은 과로의 평가 사례가 있음.

사례 39

[사례 개요]

- 40세 남성. 2010. 5.~2011. 6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2011. 6~2012. 6까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대형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하고 6개월째임.
- 격일제 근무, 총 36km의 노선을 하루 8회 운행 원칙(1회당 1시간 40분~2시간). 1일 운행 시 약 17시간 운전, 3일 연속/ 2일 연속 근무하는 날이 있음.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주 간 63시간 58분, 12주간 68시간 42분으로 계산함.
-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진료기록 상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 발견되지 않고,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심장 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실세동을 발생시키는 심장질환 또는 뇌질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그 원인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곧바 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문]

"망인은 1년 이상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대형시내버스를 운전하였는 바, 망인은 버스 운전업무와 이 사건 회사의 업무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심 판결문]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주 간 63시간 58분, 12주간 68시간 4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을 포과하거나 근접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을 심혈관질환이 아니라고 보아 과로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충분히 적응하였으므로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에서는 장시간노동에 근거하여 만성과로를 인정함.

- -> 장기간 같은 일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에 적응하여 스트레스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만성적 과로의 개념에 어긋남. 업무부하가 큰 일을 오래한다면 적응되어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 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장기간같은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과로/스트레스를 배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 말 것
- ⑦ 촉발요인으로서 고된 육체노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물리적 환경의 고려
- 심장사고에 있어 촉발요인(trigger, 방아쇠) 의 역할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음. 심한 육체활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추위나 더위 등이 이러한 촉발요인에 해당됨.
-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이미 촉발요인으로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건에서 드러나 있는 촉발요인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 요한 사항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사례 13

[사례 개요]

-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입출고 관리하던 63세 남성노동자로, 주 6일 52~57시간 근무함. (평일 8~9시간/일, 주말 중 1일 12시간/일)
- 사건 발병 당일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 빨리 출근하여, 넉가래로 주차장 제설 작업함. 제설작업 시작한지 약 50분 지난 후에 쓰러진 채 발견됨. 심근경색 증 진단 하에 치료받던 중 2011년 4월 13일 사망함.

[근로복지공단]

망인이 통상업무를 수행했고, <u>발병 당일도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 업무 부담</u>이 없었으며,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요지]

사건 당일 <u>추운 날씨에서의 한 시간 가까운 제설작업은 평상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지 않던 고령의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u>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례 12

[사례 개요]

통신기기 유지 보수 업체에서 일하던 26세 남성으로, 2012. 4. 30. 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짐.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총 초과근무시간은 19시간 50분.

토요일 근무 (21시까지 근무)후 일요일 휴무. 월요일 06시 44분, 상사의 출근 독촉 전화 "토요일에 설치공사를 한 주식회사 0000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도착하여 교환 기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라". 전화를 받고도 곧바로 일어 나지 못했고 상사는 망인의 출근여부가 불안하여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와 다시 언성을 높이며 당장 내려올 것을 지시. 이후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건 발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적인 출혈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u>업무 내용 및 강도</u> <u>를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u>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심 판결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망인은 회사 상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망인이 토요일에 지원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급기야 상사가 망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망인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며,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 바,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과 출근 독촉을 받는 것은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은 점 (...)"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에도 촉발요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고 촉발요인의 방아쇠효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도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나 잘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고된 육체노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등 현재까지의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여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좀 더 유연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함

⑧ 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 정량적/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관계갈등, 감정노동, 고용불안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업무 부하를 높이는 요소임. 대부분의 피재자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나 객관적 평가가 어렵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를 하나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사례 9

[사례 개요]

62세 남성, 광산의 자원개발 업무로 카메룬에 출장 근무 중 2011. 12. 25.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심장질환과 말라리아 둘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혈액검사에서 말라리아가 확인되었고 증상은 있었으나 다른 장기 손상 등 중증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직접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량 증가내역이 없으며 작업환경 변화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공단 자문의 3명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심장내과) 은 모두 작업환경의 변화, 아 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는 환경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을 인정하였음

[판결문 요지]

망인은 카메룬 현지근무가 첫 국외 근무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와는 다르게 현장숙소 건축, 도로정비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를 하게 된 망인이 겪었을 어려움 (...) 2011. 12. 5.부터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게 되면서 근무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12. 19. 에는 현장사정으로 다음날 06시까지 밤샘작업을 수행하는 등 근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19

[사례 개요]

52세 한국계 중국인 남성 노동자로 2011.3.9 모텔 침대 시트와 수건을 세탁, 건조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세탁보조업무를 하던 중 2011.7.1 뇌내출혈 진단 받음.

휴무일은 월 2일이었으나, 실제로는 4월에 5일(병가 4일 포함, 구토, 두통, 무력감 등), 5월에 1일 외에는 쉬지 않고 일함.(발병 전 34일간 연속근무) 일요일과 월요일은 물량이 많아 2시간 연장근무.

- 물리적 환경: 90평 작업장 내에 선풍기 2대.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 아이롱기계 1대 가동. 환기 상태가 불량하고 무더웠다고 함. 발병당일 최고기온은 31.3도였고 작업장은 외부온도보다 3-4도 이상 더 높았고, 재해자의 작업위치에는 선풍기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입사 2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고(4월 급여 2일 지연, 5월 급여 16일 지연, 6월 급여 13일 지연), 발병 한달 전 매출 감소로 업무량이 감소해 고용불안이 있었음.
- 발병 20일전부터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아이롱 기계 담당 근로자들이 앉아서 작업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발병 20일 전부터는 매일 욕을 하기도함.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량을 확인할만한 매출자료나 과로를 확인할 CCTV, 출근카드 등의 <u>객관적인 자료는</u> 확인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판결문 요지]

최근 3개월간 근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고 판단. <u>또한 무덥고 열악한 작</u> 업환경과 급여지급 지연, 고용불안,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음.

사례 43

[사례 개요]

- 원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4 공사현장 2층에서 쓰러진 채로 발생하여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함.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임.
- 건설공사 경험이 없이 현장소장직을 처음 맡아. 여러 문제와 갈등에 봉착하였으며 공

기 압박도 있었음.

- 사망 전날 노동부에 가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1시간 30분) 받음.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 근무 시간은 07:20~19:00까지로 추정하고, 근무기간 중 <u>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u>, 업무상 육체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발생했다고 보아 불승인함.

[2심 판결 요지]

-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으나,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촉발시켰을 것으로 판단함. 직접 일하지 않았어도 대기 시간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처음 하는 현장소장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인부들과의 갈등, 공기 압박, 피의자 신문 등) 도 컸을 것으로 판단함.
- ->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노동, 과도한 책임, 긴장된 업무 등 다양한 업무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은 정량화/객관화가 어렵기에 거의 과로의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노동시간, 업무량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고용노동부 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고려하여 과로를 평가할 필요있음.

2) 의학적 측면

① 기존 질환의 기여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뇌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질병이 있으면 과로보다 기존 질환이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배제
- 법원의 다른 해석 :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뇌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과로함으로 인해 질병 발생이 앞당겨질 수 있음. 심지어 기존의 질환이 있다면 과로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더 취약성(민감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참고]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중 제 6장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pp.645-646 인과관계 및 입증의 정도

판례는 업무상질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u>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u>결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u>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u>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사례 42

[사례 개요]

- 식품제조회사 사무직으로 경리업무를 5년 6개월간 수행하다, 2012. 12. 28 회식을 마치고 개인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뇌실내 출혈 발생함.
- 주간 평균 5~7시간 초과근무, 발병 전 1주일은 13시간 정도 초과근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등 객관

적인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의 기존력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 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요지]

(...) 비록 원고가 2008. <u>본태성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있으나</u>,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u>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u>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사례 16

- 제약회사 영업직, 48세 남성으로, 2012년 4월 28일(토) 10:30분 경부터 거래처인 병원 의사 및 직원들과 등산, 약 40여분 후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12:00경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12:45 급성관상동 맥증후군(추정)으로 사망. 2008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투약중인 기존의 심질환자. 근로복지공단의 심의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주말 산행은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다고 판단되며,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기존 질병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인 발생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심사 기각, 재심청구 기각.

[판결문 요지] 1) 망인은 영업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거래처인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의 재해일에 함께 등산에 참여하였던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모 병원이었고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망인만이 참석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일에 있었던 등산은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망인이 주말에 거래처 병원의 의사 또는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비용이 충당되었다. 다) 망인은 주중에는 오후에 거의 매일 거래처 병원으로 출장을 다녔고 특히 주 1-2회 부산, 광주, 대전에 소재한 병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되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망인이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항고혈압제, 협심증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본인의 질환을 잘 관리하여 왔다. 마) 망인의 주치의 및 00병원의 의사 역시 망인의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이 사망 직전까지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질환이 있

는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겪는 경우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기존질환을 잘 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피재자가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피력하고 기존질환이라는 주요 원인에 과로가 겹쳐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인정 함

사례 21

[사례 개요]

- 피재자는 만 39세로, 2012.12.1 C주식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품질관리 및 영업관리를 담당. 주당 근무시간은 약 60시간. 2013.1.9 18:50경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뇌간부출혈로 사망. 고혈압 병력: 2006년 150/100, 2012년 건강검진시 170/120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으로 판정받았으나 약물치료 기록 없음.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불승인.

[판결문 요지]

- 피재자는 입사한지 12주가 되기 전에 사망했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 규정으로 보 아야 하므로 반드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가 12주 이상 지속되어야만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 피재자의 경우 직장이 없다가 입사와 동시에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곧바로 수행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강도 높은 근무시간이 사망 전까지 지속되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정
- 위 고시는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인데, <u>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부터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치에 다다르고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u>
- *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로서 일반인보다 오히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계 질환에 취약하였다는 논리로 인정함.

- ② 건강관련 생활습관(흡연, 음주)의 기여 정도에 대한 판단
- 흡연과 음주, 낮은 신체활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에서 잘 밝혀진 뇌심혈 관질환의 위험요인임. 이에 근거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은 건강증 진활동의 중심이 되며 보건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활동임
- 그러나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 개인의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 법원의 경우 흡연, 음주력이 있더라도 과로가 있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기존질환과 같은 논리(겹쳐서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자에서 과로가 질병을 촉발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흡연 및 음주가 있었으나 건강상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다고 추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사례 28

[사례 개요]

- 철구조물 및 샤시를 제작·설치하는 업체의 부장(남성, 46세, 176cm, 64kg)으로 준공시한을 앞두고 휴일 없이 근무하다 2011년 5월 5일 04시경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잠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을 받음
-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30년간, 1주에 4-5회 음주. 1주 총 소주 2병 정도 [근로복지공단]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원고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오전 04시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년 1월경부터 2011. 3 경까지 3개월의 근무현황을 보아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u>원고는 상</u> 당한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는데, 이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인자이므 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피고 지사 자문의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발병일 기준 1개월 이내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판결문]

1)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까지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비만과 같은 뇌경색과 연관된 기저질환이나 기왕력이 전혀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

<u>해왔다</u>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월 하순부터 최소한 약 30일 이상 휴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극심한 두통 등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끼고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현황을 보면 정규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외에도 자재, 공구 등 준비작업 및 정리 작업 등으로 거의 매일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하략)

→ 뇌심혈관계질환은 대표적인 다요인적 질병으로 상당히 많은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됨. 그렇기에 이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개인적 위험요인이 없다면 업무적 요인이 질병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정당함. 한편으로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기에이미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상태로 더 적은 업무적 요인만 더해져도 질병발생에 이를 수있다는 추론 역시 가능함. 한 개인에서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서 개인적요인과 업무요인을모두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설사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요인이 더 적게 기여했으므로 인과관계가 부족다고 볼 수 있는가? 업무적 요인의 기여가 더 적더라도 그 요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수많은 역학연구를 통해서 과로와 뇌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수준의 과로가 있을 경우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업무상질병으로서의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기존질환이나 생활습관에 대해 평가하여 그에 따라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위와 같이 매우 다르게보이는 주장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 보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질환이나 생활습관의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과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 일정수준 이상의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즉, 기존의 질병과 생활습관은 과로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함.

③ 과로/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 업무관련성의 평가에 있어서 주치의, 자문의, 질병판정위원회, 감정의 등 의학전문가의 전 문적 견해는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질병의 원인, 발생기전,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평가의 측면에서 잘못된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견됨
- 아래 사례들의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현상적인 측면을 원인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거

나 역학적으로 업무상스트레스나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 24

[사례 개요]

2010.3.2 해당회사 함안공장 생산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3.11.8 14:30경 작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편마비, 자발성뇌출혈 진단받음. 냉동설비제조업무 중 열교환기 오일쿨러 제조 및 조립 담당조 조장으로 작업지시 및 제작 업무(사상,제관,용접 등) 담당. 사업장 내 공장설비 관련 작업도 함.

- 근무시간은 08:00-17:00(월-금), 08:00-15:00(토). 필요한 경우 19:30까지 연장근무. 점심시간은 12:00-13:00. 재해자의 평소 주당 근무시간 51시간 20분. 발병 1개월 전 44시간 30분, 2개월 전 42시간 30분, 3개월전 64시간의 연장근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작업현황, 관련 필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발병 전일 휴무를 하였으며 장,단기간 동안 일상 업무보다 특히 과로한 사실 없으며 <u>뇌출혈상태도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와</u>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판결문 요지]

재해발생 1개월 전에 44시간 30분, 2개월 전에 42시간 30분, 3개월 전에 6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자발성뇌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인데 망인은 고혈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인정함

* 업무상질병의 대상이 되는 뇌출혈의 상당수가 고혈압성 뇌출혈임. 뇌출혈을 크게 머리를 다쳐서 출혈이 생기는 외상성 뇌출혈과 다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자발성뇌출혈로 나누며 자발성뇌출혈의 가장 많은 형태가 고혈압성 뇌출혈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음.

사례 28

[사례 개요]

- 철구조물 및 샤시를 제작·설치하는 업체의 부장(남성, 46세, 176cm, 64kg)으로 준공 시한을 앞두고 휴일없이 근무하다 2011년 5월 5일 04시경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잠자 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을 받음

[근로복지공단]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원고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오전 04시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년 1월경부터 2011. 3 경까지 3개월의 근무현황을 보아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당한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는데, 이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인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요지]

근무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발병 전 1개월 전 1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발병 10일 전부터는 공사 마감을 앞두고 사업장 인근 동 료 직원의 숙소에서 숙식할 정도로 근무하는 등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심각하게 초과 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추인하였고 (...)

-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해 간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
- * 실제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장시간 노동하거나 (보통 주당 노동시간 50-60시간 기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뇌출혈/뇌경색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교감신경 활성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기전, 혈액응고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에 의해 뇌혈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

사례 30

[사례 개요]

53세 굴삭기 운전기사로 급격하게 증가한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2개월 동안 휴무일이 7일에 불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법원에서는 혈관 퇴행성 변화와 관계없이, 급격한 업무 증가나 책임 있는 지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혈관 폐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

[피고(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심장검사 필름 상 확인되며 이는 <u>심장혈관의 퇴행성변화</u>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됨"

[판결문 요지]

망인의 정해진 근로시간은 일 9.5시간으로 긴 편이었고 최근 2달 동안 휴무일이 불과 7일에 불과하여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근로시간에도 이전보다 작업량을 늘리

기 위하여 강도 높은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됨

- * 심장혈관의 퇴행성변화가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과정에 앞서 동반될 수 있으나 혈관의 퇴행성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의 관련성은 위 서술한 바와 같이 알려져 있음.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자문의사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되는 뇌심혈관질환,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4. 나가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상당수의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평가가 편협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파악됨.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될 사례들을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정신적인고통 역시 줄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구제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과로의 평가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시간 여부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과로의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야간근무, 대기/휴식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합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의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을 산재보상 결정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의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과로와의 상승작용, 과로의 촉발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음.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자문의, 공단 직원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배포, 심의한 사례의 최종 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공단의 노력이 필요함.

뇌심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도 근로복지공단 뇌심질환 패소판결문 분석에 기초하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권동희(cpla1004@gmail.com.)

I. 뇌심질환 승소 판결문 분석 작업

1. 기본적 문제의식

- . 2013년 고용노동부의 만성적 과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3-32호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3. 6. 28³))인 주 60시간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고시(주말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 이를 포함해 고용노동부의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2013-32호, 2013. 7. 31.)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상 과로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판정지침에 있어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이 있지만, 이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지사에서 조사하여 심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거의 부재합니다.
- . 산재법상 인정기준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수차례 확인된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³⁾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 7. 1.)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출퇴근중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 . 서울행정법원에서 발간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보면,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시행 령의 조항과 그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이지만, 위 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속력이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p. 680. 서울행정법원)
- . 결국 뇌심혈관계질환에 있어 공단(판정위원회)의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 지침에 사실상 매몰되어 있으며, 고시 및 지침상의 기준을 예시적 기준으로 삼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획일적 기준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의 뇌심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단이 법률적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 . 아울러 현재의 판정위원회의 판단구조(임상의, 직업환경의 중심)가 법률적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구조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을 줄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

2. 분석내역

- : 대상 판결문은 근로복지공단이 2015년도 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 . 공단의 '뇌 심혈관계 소송현황(2015)' 데이터를 보면, 2015년도에 뇌심질환 소송은 총 333건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2015년도에 공단이 패소로 확정된 사건은 총43건입니다.
- . 공단은 매년 '소송상황 분석' 자료집을 통해 패소 사건의 판례 요약문을 정리하고 있으나, 그 내역을 보면 판례의 취지를 왜곡되거나 일부만 간추린 정도이므로 내역을 알 수 없었 습니다.
- . 이에 각 사건번호로 법원에 직접 공개 청구하여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심 노동자 승소 후 2심 유지사건인 경우 대개 판결문이 동일하므로 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 2심 패소 후 2심 승소한 사건 후 확정된 사건인 경우 2심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분석대상은 2015년도 뇌심 판결문 총 43건입니다.

3. 판결문의 분석방법 및 내역

가. 개요

- . 즉, 판결문 분석을 위해 엑셀 시트를 구성했고, 그 내역은 "사건번호(1심, 2심, 3심), 전심절차, 성병, 직업(대분류, 세부직종), 상병명(상병명, 사임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시간(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시간외 질적 측면(업무량, 노동 강도, 책임, 기타 질적 측면),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평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 엑셀시트와 별개로 각 사건에 대해 한글 요약시트(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시트 는 "사건요지, 사건개요,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사건 특이사항 및 쟁점, 취소의 주요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 . 판결문 분석과 병행한 엑셀시트 및 한글시트를 토대로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의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과로 평가 측면에서의 문제점, 법 규정 해석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요약본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지침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 판결문 분석 내역

. 이는 "2014년도 뇌심 승소판결 엑셀시트 분석표", "각 사건에 대한 (한글) 분석"으로 첨부합니다.

Ⅱ. 현행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인정 기준

1.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 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 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4인 제시안

참고로 구 고용노동부 고시(만성과로의 기준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증가한 경우로 획일화하여 판단한 기준; 노동부 고시 2008-43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노사정이 각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7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업무상 뇌심혈질환 인정기준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해 제안서를 보면, 고시에 대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안(해설)에서는 "교대근무는 그 자체로도 교대제 적응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야간근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담정도는 더욱 커진다.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제 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산정에서 20%를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4)

- 1.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직전 12주의 평균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직전 4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 2.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직전 12주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관련성이 증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 ① 불규칙한 근무
- ② 출장이 많은 업무
- ③ 교대제 근무
- ④ 작업환경(온도환경, 소음, 시차)에 노출된 업무
- ⑤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업무
- ⑥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 ⑦ 야간근무
- 3. 뇌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직전 12조의 평균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 미만에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 관련성은 낮으나, 2항의 각호가 2개 이상 중첩되는 근무 경우에는

^{4) 2008}년도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인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8.11., 주관 기관: 연세대학교)는 만성과로에 대해 최초에는 "발병 직전 3개월의 근무시간이 월간 209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연구보고서에서는 야간근무에 있어 20%를 추가하여 근무시간에 산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지침 :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2013-32호, 근로복지공단; 2013, 7, 31.)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2013-32호) 일부

-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가.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괴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 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O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괴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 O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괴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아긴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함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 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아간근무(아긴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 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음

나. 판단요령

- <종합검토원칙>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아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건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의 누적을 가져온 업무적인 부담 요인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업무시 간, 업무량, 업무내용,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판단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업무상 부담요인 평가시 그 이 외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량, 강도 등)을 고려
- O 업무시간 평가는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확인한 후 그 다음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평가
- O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 O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높아지는 점과 업무 부담 과중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업무 부담 괴중 요인은 아긴근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불규칙적인 근무형태, 고온·저온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의 업무 등을 말하며
 - ※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는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참고
 - 특히, 아긴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는 아긴근무 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서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량·업무강도·책임 등 업무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 O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 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산입
- O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 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Ⅲ. 판결문 분석의 구체적 내용과 시사점

- 1.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확정하여 수차례 판결 하고 있습니다.
- .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하며,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제3항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하며, 이에 따라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시는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 . 그렇다면, 고시는 산재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고시 기준에 부합한 경우라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가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의 지침은 '위법적인 고시' 또는 '위법적인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 . 분석대상판결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적 기준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 하고 있습니다.
- . 서울고등법원(21번)은 "그러나 위 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가 12주 이상 지속되어야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망인의 경우 특별한 직장이 없다가 입사와 동시에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곧바로 수행하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그에 더하여 강도 높은 근무시간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래된 심장·뇌혈관의 부담과 만성적 피로로 인해 초래된 심장·뇌혈관계의 부담이 동시에 재해발생에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위 노동부 고시 규정(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12주 이상지속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만성적 피로

만을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망인에게 적용할수 있는 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위 노동부 고시는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인데,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부터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치에 다다르고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고혈압 환자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관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노동부 고시를 망인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못 된다"라고 하였으며,

- . 또한 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20번)은 "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1시간으로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1. 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규정된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의 업무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의 비중이 매우 크고 2교대제 기간 동안 야간근로의 증가폭도 매우 큰 점, 다. 위 고시에서도 야간근무의 경우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라. 위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고시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4주간) 동안의 급격한 업무상 부담의 상대적 증가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행정법원(40번)은 "물론 위 [별표 3] 제1항 다목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계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따라 필요한 사항」고용노동 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의 기준에 따르면'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 담의 증가'는 발병 전 1주일을 기준으로 증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만성적인 과 중한 업무'해당 여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위 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혈관게 질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 과중한업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망인과 같이 정확한 업무시간이 파악되지 않는경우에는 단순히 업무 시간만을 기초로 제정된 위 노동부 고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동부 고시의 규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 결국, 법원은 과로 인정에 있어 "근로시간의 수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지침과 같이 "주 60시간 이상 과로"등의 획일적 기준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당인과관계론에 입각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 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에서 이러한 고시의 예시적 성격 및 법률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별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의 판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 현재 고용노동부고시에서 단기과로의 경우 1주일의 업무량 변화 30%를 제시하고 있으며, 만성과로의 경우 12주간 60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 습니다.
- . 이를 위해서 공단은 판정지침에서 단기과로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변화, 만성과로의 근로 시간(4주, 12주의 각 64시간, 60시간 초과여부)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대상사례에서 보면, 1주일의 업무량 변화가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은 사례(12번, 20번, 30번) 뿐만 아니라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함에도 인정되지 못한 사례(32번: 발병 13주간 충근무시간이 770시간 48분(주 64시간) 인 경우, 38번: 사망 전 2주간 평균 61시간, 12주간 62,3시간), 실질적인 만성과로인 사례(30번)도 있습니다.

12번: 망인은 평소 주5일 근무로 업무가 많을 경우 주1 내지 2회, 1회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는 정도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일주일 전인 2012. 4. 23.부터 2012. 4. 27.까지 5일간은 매일 연장근무를 하여 20:00 내지 21:40경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인 2012. 4. 28.까지도 아침 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는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50% 가까이 증가하였는 바, 위와 같은 업무증가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 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따라서 공단이 최초 조사에 있어 공단이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사한 내역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역이 상이할 경우,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역을 시트에 명시하여 구체적인 심리 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공단은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판단에 있어 소극적인 반면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은 근로시간이외 다양한 스트레

스 요인을 중요하게 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어 돌발과로의 상황에 대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정지침에서 "시간 경과의 의학적 타당성5)을 확인하되, 상황 이후에 24시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는 주치 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확인,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을 일으키고, 혈관 병변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뇌심혈관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즉, 돌발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주로 의학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판정위원회에 심리에 있어 의학적 판단에 경도되고 있습니다.
- . 대상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급성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을 구체적인 심리에 기반을 두어 의학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고당일 상사가 집 앞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한 것"(12번), "발병 당일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이로 인해 머리가 아파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252/140mmHg로 진단된 사안"(34번), "사망 전날 노동부에 가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1시간 30분) 받은 사건"(43번) 등을 급성스트레스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3번: 나아가 형틀목공인 G이 작업을 온 첫날 오른 팔꿈치 연골이 다쳤다며 산 재처리를 요구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안전모 미지급으로 망인을 노동부에 고발하여 망인이 2012. 6. 12.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바, 이는 현장 소장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법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위 피의자신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평균적인 사람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자체로 큰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고 외관상 긴장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수 없다.

.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보면, 급성스트레스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급성스트레스를 명확한 의학적 평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 인정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해 판정지침에서 이를 넓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업무상의 재해 판단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03.26. 선고

⁵⁾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촉발되었을 것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2003두12844 판결 참조).

. 공단은 지침 및 복명서에 있어 재해자의 근무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text
내용	근무형태, 업무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기술
업무내용	-text
관련	빈번한 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정신적·육체적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기술
특이사항	

- . 공단 지침상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별표 2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신적 긴장의 내역, 즉, 스트레스 내역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표 2 이외 정신적 긴장의 내역은 아예 조사되거나 복명서, 심의 안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 . 법원은 각 사건에 있어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경향이 있고, 이를 구체적인 상병의 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스트레스 요인 또한 중요한 내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와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 따라서 <u>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반드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u> 뿐만 아니라, 이를 체크식이 아닌 구체적 기술식으로 개편하여 재해발생 전 스트레스에 내역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별표2「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구체적 업무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 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	 의허서이 저도 어므랴(그ㄹ시가 노도가도)
44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위험성의 정도, 업무량(근로시간, 노동강도), 업무종사시간, 경험, 적응능력, 회사의 지원,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
로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MOAL AMA 07 0
정신 적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과도한 달성목표가 있는 업무	달성목표의 내용, 곤란성·강제성, 페널티의 유무 등
I —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 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	저해요인의 크기, 달성의 곤란성, 업무량(근로 페널티의 유무, 납기 등의 변경 가능성 등 강도, 업무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	고객의 위치 매김, 손해의 정도, 노종사시간,
	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사분쟁의 해결의 곤란성 등 경험, 적응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 란한 업무	업무의 곤란도, 사내에서의 입장 능력, 회사 등 의 지원 등)
	복잡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 당하는 업무	프로젝트내의 입장, 실행의 곤란 성 등

	사 건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업무상재해로 큰 상처나 병을 입었다	업무상재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유무, 사회복귀 의 곤란성 등
발병에 발병에	중대한 사고나 재해발생에 직접 관여하였 다	사고의 크기, 가해의 정도 등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목격)을 하였 다.	사고나 피해의 정도, 공포감, 이상성의 정도 등
정신적 긴장을	중대한 사고(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 다	사고(사건)의 내용, 책임의 정도, 사회적 반향의 정도, 페널티의 유무 등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큰 실수를 하였다	실패의 정도·중대성, 손해 등의 정도, 페널티의 유무 등
사건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업무목표의 내용, 달성의 곤란성, 강제성, 달성 율의 정도, 페널티의 유무 등
	이동(전근, 배치전환, 비연고지 근무 등)이 있었다	업무내용·신분 등의 변화, 이동이유, 불이익의 정도 등
	상사, 고객 등과 큰 트러블이 있었다	트러블 발생시의 상황, 정도 등

- 4.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에 있어, 공단은 노동시간에 매몰되어 경직된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노동시간 외 "업무량"에 있어 더 넓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단은 지침상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실제 공단은 지침상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 책임·부담이 높은 업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의 업무강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 이를 조사복명서 및 판정위원회 심의 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면이 구체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 . 공단은 조사복명서에 아래와 같이 있어 체크하고 있지만,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내역이 업무강도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강도,	□이동(승진, 승격, 전임, 전출 등 전	전환배치, 비연고지 근무 등)
책임 등	□중대한 사고(건)의 경험/목격	□중대한 사고(건)에 대한 책임
관련	□업무상의 중대한 실수	□업무목표의 미달성
특이사항	□감원 등 경영상의 구조조정	□업무상의 대인관계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노동	□기타 업무상 사유
	□해당없음	

. 즉, 판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외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팀 인원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 업무량 증가, 팀장업무 보조 업무 증가 등으로 업무량 증가된 사안'(5번), '4-5배 입환 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연동된 다른 업무도 증가된 사안'(8번),'가을 단풍철 유람선이용객 급증(최소 3배, 재해일 5.6배)으로 청소 업무량 증가'(15번), '담보대출건수 및 금액에 있어 2 내지 3배가 증가된 사안(31번)','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담당함으로 인해업무량이 증가한 사례'(10번)입니다.

8번 : 원고는 2011. 12. 26. 야간근무를 하면서 당일 18:55분경부터 12. 27. 00:43분경까지 팀원인 B와 함게 계속해서 20회에 이르는 전동차 입환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u>평소보다 4-5배 정도 입환업무가 급증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u>원고는 실내 화장실에 갈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입환업무를 수행하였고, 입환업

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입환업무와 연동된 원고의 다른 업무 역시 증가하였다.

- . 현재 공단은 명확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평가하 거나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근로시간만큼 중요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현행 공단의 지침상 단기 과로시 업무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단순히 30% 이상인지에 대해서면 체크하고, 그 이유도 '생산(업무량) 증가, 인원 축 소, 기타'로 구분되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과로의 경우에는 업무량에 대한 별도의 증가여부를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태만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 어 만성과로의 판단에 있어 '재해자의 업무량 변화'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합니다.
- . 따라서 <u>업무시간 이외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조사 목록(증거 조사 목록)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침상 반영하여 판정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리할 수 있도</u>록 해야 합니다.
- 5. 법원은 노동시간/업무량에 판단에 있어 고시(24시간, 1주, 3개월의 구분으로 인한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단기과로 요건 30% 및 만성과로 요건 60시간 기준)로 국한하지 않고,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위 고시 및 지침에 의거하여 "24시간, 1주, 3개월의 구분으로 인한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 특히 공단의 지침상 "단기과로(발병전 1주일), 만성과로 (발병전 12주간)"에 매몰되어 수치화되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평소 업무량에 비해 30%를 초과하는지, 발병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 . 사례에서 보면, '발병 전 10일 동안 휴일이 없었고, 초과 근무시간도 합계 66.5시간에 이르러 과로를 인정한 사안'(4번),'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담당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사례'(10번),'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지만 법인 전환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공사 마감을 앞두고 인근 동료숙소에서 숙식할 정도로 연장근로를 한 점을 인정한 사안'(28번),'공장 이전으로 인해 생산부 총괄 과장인 피재자의 업무 양, 시간 및 업무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본 사안'(38번), '초과근무내역은 없으나 발병 3개월 전부터 대규

모 행사진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동료직원 등의 진술 등으로 인정한 사안(40번), '추석특수로 업무량 증가를 인정한 사안(11번)'등이 있습니다.

28번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3월 하순경부터 최소한 약 30일 이 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극심한 두통 등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끼고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실제 그누 상황을 보면 정규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이외에도 자재, 공구 등 준비작업 및 정리작업 등으로 거의 매일 약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4월경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4월경 1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심각하게 초과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

- . 또한 사례에서 '공단에서는 입사한지 12주가 되지 않아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만성과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21번), '건축소장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12주 1주 평균근무시간을 69.1시간으로 본 사안'(43번)이 있습니다.
- .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를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보는 일관된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노동 자의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해야 함을 고시 및 지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6. 공단은 지침상 사인미상의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공단은 위 지침상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 발병원인 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라고 합니다.
- . 이로 인해 공단은 사인불명의 재해의 경우 지침상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 구체적 입증내역이 없는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 법원은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력이 없었음에도 돌연사 한 것은 야간운송 업무, 불규칙한 생활, 수면부족, 갑작스런 운송업무 부담, 운송 업무 자체의 긴장도 등이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판단'(29번), '버스운전기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 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이 심근경색 혹은 다른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 었을 것으로 판단'(39번)하였습니다.

29번: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망인의 근무형태와 내용을 볼 때 급성심장사를 초 래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와 수면 부족이 뚜렷하였고, 운송 업무 자체가 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특히 과거력이 없는데 사건 발생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가 이후 수분 이내에 사망하였으므로, 순환기계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슴 놏 증이나 호흡곤란 등은 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 . 공단은 사인미상의 재해에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추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는 '기존 개인질환 및 위험요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 사인미상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추정사인이 있는 지 여부, 임상경과를 통해 추정사인이 적합한지 여부, 과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 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 기타 뇌심질환 판정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① 판정위원회의 판정위원 구성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의 획일적 적용, 의학적 판단은 명백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규정 제11조(심의회의의 구성) 제2항은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을 줄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병명이 주치의사및 자문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상병명이 불일치할 경우 원처분 지사에서 특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2명이 참여하는 심의회의 판단구조는 판정위원회를 의학적 판단경향에 매몰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전문의를 줄이고 법률전문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맞는

방향입니다.

- ② 적극적 조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판정위원회 심의안의 부실성 또는 재해조사의 미비를 문제삼고 재조사나 추가조사를 명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뇌심질환에 대해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단은 심지어 대리인이나 재해자에 각종 자료(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확인서, 사실확인서, 뇌혈관·심장 질병 일자별 근무시간 확인원, 일자별 근무시간 확인서 등)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 증명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현장의 작업과 과로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재해조사 내용 (가령 육체적 노동 또는 직업환경상의 가중요소 등)이 재해조사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뇌심질환에 대해서도 근골질환과 마찬가지로 반드시답당자가 현장조사 및 구체적인 사건조사를 하고, 작업내용과 방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함이 판정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③ 개방적 민주적인 판정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판정위원의 기피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위원회가 2주전 위원을 공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부의안이 추후 공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판정위원회 제도 역시 민주적 개방적인 구조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위원이 심의하는지 알 수 있어야 기피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며, 심의안이 공개되는 구조가 되어야 보다 충실한 심의안이 작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

〈토론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계획

이철(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토론 2〉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

1. 뇌심혈관계질환 업무관련성 판단에서의 쟁점

- 1) 출장(해외 및 국내)업무의 업무상부담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 해외출장이든 국내 출장이든 8시간으로 판정하는 사례 다발.
- 잦은 출장업무 자체가 과로의 요인임에도 과로요인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
- 2) 업무환경의 변화를 수치와 경직된 기준으로 파악.
- 고시의 단기간과로 규정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30%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복합적인 환경의 변화와 부담을 과소평가.
- 이주노동자 등 최초입사자가 과도한 작업을 하다 입사 2, 3일만에 쓰러진 경우, 발 병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며 불승인
- 3)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대한 기계적 제외 : 취업규칙상의 식사시간/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다발, 또한 현장조사없이 회사관계자와의 유선문답을 통해 확인
- 4) 업무상과로 요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직업환경의학 차원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 필요.

2. 판정지침에서의 대기시간과 감시단속업무

-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는 대기시간과 관련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산입"토록 하고 있으며, 감시단속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 대기시간이 업무와 독립하여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시간을 업무상부담을 주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함.

- 업무로부터 독립된 수면공간과 수면의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순찰대기, 비상대기, 경비실 가면 등)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함.

3. 발병의 기준. 일반인 또는 동종근로자? 근로자 본인의 건강상태?

- 현행 고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 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판정참여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

- 현행 판정제도에서 직업환경의학의는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맡고 있으며 판정 결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현행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현안.

- 연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건수 : 2015년 9,781건.
-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 : 평균 18.6일(2015년 기준)
- 회의당 처리건수 : 전체 759회 10,362건, 회의당 : 13.7 서울 196회 2,968건, 회의당 : 15.1건
- 1) 처리기간의 과도화 (최초 신청인이 산재신청한 시점부터 재해조사, 서류조사, 추가서류 확인 등을 거쳐 판정위원회에 부의될 때까지의 기간 소요를 감안할 때) 현행 재해조사방식부터 판정방식은 질병을 장기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음.
- 2) 과도한 재해조사와 판정건수는 조사와 판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 3) 자체승인 대상의 확대를 통한 회의건수의 축소 : 전문적인 심리 보장
- 주치의나 공단 자문의사의 판단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사근무형태에서 발병한 유사상병
- 4)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상질병 판정체계 구축
- 심리건수 및 심리위원의 축소를 통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판정
- 5) 중장기적으로 판정중심에서 요양관리중심으로의 업무상질병 판정시스템 개선 필요

〈토론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심혈관질환 평가 과정의 개선 방안

최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장시간 노동 이외의 직무스트레스 정교한 평가

과로를 평가할 때, 노동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안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업무상 과로를 정의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정의하기 가장 쉬운 것이 노동시간이므로, 노동시간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채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 이외의 직무스트레스 역시 뇌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 인자 중하나다. 넓은 의미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직무불안정(구조조정과 해고), 보상불균형, 일과 삶의 균형, 조직체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런 요인들 역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여러 역학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전향적 추적 관찰 연구를 모아 2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해봤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비해, 관상동맥 질환은 34%, 뇌경색성 뇌졸중은 24% 더 위험했다. 핀란드에서 22,400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노동자의 경우(해고되지 않고 고용이유지되었음에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뇌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2배높았다. (Curr Cardiol Rep. 2015;17:74)

게다가 최근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뚜렷한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신,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인체 반응이 뇌심혈관질환 발생에 함께 기여하거나, 더 취약한 개인들에게서 질병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Annu Rev Public Health. 2013;34:337)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거나, 고지질혈증이나 복부 비만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도 있고, 특히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감정적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으로 인한 급성 영향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더욱 명백한 의학적 인 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한 요인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일반인구에서 상당히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은 의학적 타당성

못지 않게 사회적 요구와 기준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기준이 질병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다면 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노동시간 이외의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교하고 자세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제문에서 보듯이, 노동시간 그것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국한된 평가가 주가 되고,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최소한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라도 충분한 평가와 검토, 고려가 필요하다.

업무 평가 구체화

이를 위해 업무 평가가 훨씬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업무상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질병'과 '업무'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기초로,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스트레스의 다양한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조사가 필요하다.

질병판정위원회 조사관 1명이 한 달에 처리해야 하는 조사가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대체로 당사자(재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거나, 문답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요식적인 현장조사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진수, 민주노총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 개선 워크숍, 2015)

이번 발제에서 분석 대상이 된 자료의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자료를 모두 검토할수 없었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소송의 경우 재해자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준비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다양한 측면의 업무 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런 자료 제출과 고려 자체가 어려웠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의 존재 이유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하는 데 있다면,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이런 충분한 검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업무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기반으로, 업무와 신체 부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사회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장시간 노동 이외 직무스트레스의 심의 반영

현재 이런 평가가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나, 평가가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성적, 질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 내용이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역시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발제문에 제안된 것처럼 스트레스의 질적 측면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심의위원들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을 상중하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해볼 수 있겠다. 현재 나열적인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자체를 재조직하거나, 중복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해볼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평가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산정 지침 개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발제문에서 제안된 것처럼, ▲과로 평가에서 교대근무나 야간 근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30%가산한다든지 ▲대기시간/ 휴식시간이 긴 노동자의 경우 그 시간의 50%는 업무 수행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든지 ▲월 2일 이하로 휴일을 가졌다면 만성과로로 본다든지하는 식의 다양한 추가, 보완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신청 사례 검토,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실제 산재요양 청구 사례에 모의 적용 연구, 전문가 의견 조사, 나아가 노동시간과 뇌심혈관질환 발생 에 관한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근거를 만들 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의 확대와 공단 내 소통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은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외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도 같은 수준에서 토론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법원의 판단 역 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분석 대상이 된 판례들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분석 대상 자체가 근로복지공단 패소 사례이기 때문 에, 법원의 판단 기준이 훨씬 일관되고, 상세하다는 인상은 오해일 수 있다.

그러나, 모순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와 이긴 경우를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의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에서 패하고,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를 넓힐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그 기준과 사례가 충분히 토론, 공유되어야 한다. 또 그런 사례가 늘어나면 단순한 사례로서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 판단의 기준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침이나 고시의 개정 등을 통해 질병판정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자문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 내에서 이런 환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시간적, 재정적 낭비가 되고 재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 다양한 질환 전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평가와 법원의 평가가 달랐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 병 심의 과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 이런 내용이 질병판정위원회 조사관, 질병판정위원들과 충분히 소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 4〉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이희자(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의 의견을 부연하도록 한다.

1. 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법원은 '개별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단기과로의경우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과로를 인정한다. 동일한 업무라도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신체에 부하되는 정도는 다르므로 법원과 같이 개별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고시요건 충족 시 불인정 관련

근로시간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발제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조사결과 재해근로자 측과 사업주 측 주장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 측 주장을 재해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가령, 재해조사서 제공이나 심의안 열람 등). 그리할 때 재해근로자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주장할 수 있고 위원들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진실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급성스트레스 관련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뇌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됨은 의학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계량화가 어렵고 주관적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

단은 급성과로(돌발과로)의 판단기준인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법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공단의 재해 조사서에는 스트레스를 표기하는 항목도 없는데 '상중하'로 표기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4. 근로시간 기준 관련

만성과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간 평균 1주 64시간)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 자의 과도한 피로축적을 방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면 법 자체의 위반은 별도로 하더라도, 규제 목적에 비추어 그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강장해를 유발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나, 그 위반사실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 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다면 과로가 있었다고 보고, 연장근로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시 연장근로의 길이에 더해,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교대제, 잦은 출장, 야간근무), 근무환경(이상온도, 소음, 시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가산점 부여 등). 즉, 필요(기본)조건으로 1주 52시간으로 정하고 충분조건으로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5. 사인미상 재해 관련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수 없다(2003. 12. 28.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며,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은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과로가 망인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는 돌연사 하였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인미상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2010. 3. 25. 선고 2010두733 판결 등).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수행하여 과로사의 원인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고, 일본의 경우「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의 인정기준」에서 심정지(심장성 돌연사 포함)를 대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의 「직업으로 인한 급성순환계 질병의 진단 인정기준」에서도 심장성급사를 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돌연사의 80%는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심장성 돌연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등에서 대상 질병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발제문 중 Ⅲ. 6의 말미에서 "사인미상의 경우라도 과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어떠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지?

6. 기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는 만성적 과로의 판단 대상기간이 '발병 전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12주'로 정하고 있어 공단은 12주이내에서 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경우 6개월 이상이나 입사 이후부터 과로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성과로는 사안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도 조사해서 과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부록〉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판례 요약

권동희 (노무사)

김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영선 (사회학 박사)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이령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이혜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246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375
•	3심	대법원 2014두14686

〈사건요지〉 야간고정근무 작업자에서 추석연휴 업무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야간근무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실신, 두개골 골절, 뇌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2010년 9월 24일 아침 6시 경, 근무 장소인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 같은 달 28일에 사망함. 피재자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직접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 혈로, 중간사인을 두개골 골절로 보고, 선행사인을 기재하지 않음. 천안지사에서는 피재자의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 두개골 골절에 이른 실신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휴게소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야간 고정작업으로 수행함. 밤 8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함. 사고 이틀전까지 추석연휴로, 손님이 많아 과로하였음. 10년간 업무 수행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개인 질병인 간질발작에 의해 쓰러져 출혈이 발생했다고 불승인. 간질발작에 의해 실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간질발작이 피재자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피재자가 10년간 근무를 해온 점을 보면, 충분한 적응되었다는 주장 →〉 적응에 대한 판 다.
-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실신한 후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간질발작에 의해 쓰러진후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고, 이후 전단력에 의해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사망원인에 불분명한 점이 있음.

4) 취소의 주요 근거

- 피재자의 사망원인을 간질발작과 이로 인한 실신과 뇌내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간질발작은 피재자의 야간고정근무와, 사망 전 추석연휴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024
3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1811
	3심	대법원 2014두14037

〈사건요지〉주 60시간에는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연장근무를 하였고, 실적압박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기존 고혈압, 당뇨가 있었음에도, 과로가 자연경과를 앞당겨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휴대폰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던 분으로, 2011년 2월 14일 저녁 9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119로 이송되어 치료하였으나 2011년 2월 26일 사망. 질병판정위원회는 피재자가 고혈압과 당뇨를 기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노동시간이 뇌심 인정기준에 못 미치는 근무시간이었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피재자는 휴대폰 판매, 매장관리 업무를 하였음. 주6일 근무,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저녁 6시. 발병전 1주일동안 22시간 16분 초과근무하였고, 1개월 동안은 66시간 초과근무를 함. 이는 현재 뇌심 인정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 다만, 2월 들어 1일 휴대폰 판매대수가 이전에 9-10대에서 14대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피재자의 근무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에 못 미쳤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연장근무가 있었음. -> 휴일이 적었던 점에 대한 평가
- 실적 압박, 새로운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을 질적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지.

4) 취소의 주요 근거

피재자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지만, 발병 3주전부터 피재자의 업무범위가 늘어났고, 근무시간이 상당하였던 점, 휴일이 부족했던 점, 발병당일에도 연장근무를 한 점 등은 명확한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피재자에게 뇌실질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함.

_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016
4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20457
•		

〈사건요지〉 현장시공 기술자문 업무를 하는 분으로 대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 근무시간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발병전 10일 동안 휴일이 없었고, 상당한 수준의 초과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1) 사건개요

피재자는 현장시공 기술자문 업무를 하던 52세 남성으로, 2011년 3월 28일 오후 2시경, 사무실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됨. 병원에 이송하여 수술을 받았고, 대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 진단받아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에게 과도한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피재자의 주 업무는 현장시공 기술자문, 신공법 개발, 수주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술이사 업무. 평소 오전 7시 30분 출근하여, 18시 30분에 퇴근하였는데, 2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와 휴일 근무도 빈번하였음. 개인 특허 관련 문제로, 사직 권고를 받은 상태였음. 사건 10일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사직권고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 평가
- 발병 전 10일동안 휴일이 없었음.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속 근무의 과로 고려 여부.

4) 취소의 주요 근거

피재자가 공사현장으로 매일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많이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발병전 10일동안 휴일이 없었고, 초과 근무시간도 많았다고 판단되어 과로를 인정. 고혈압이 있었다고는 하나, 고혈압 이외에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051
5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240

〈사건요지〉팀원감소로 인한 업무량증가, 팀장 업무 보조, 개인 잘못으로 인한 문책 등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정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의 악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손해보험회사 대물보상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박2일 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7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았다. 공단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보험회사 대물보상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병 3개월 전부터 팀 인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고, 새로운 팀장이 업무를 잘 몰라서, 팀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함. 처리 업무 중 1건에 대해 불법적 처리라는 지적으로 문책을 당하는 스트레스가 있었음. 발병전 4일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1박2일 세미나 참석하여 새벽까지 음주 후 다음날 두통과 함께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 였음. 음주가 지주막하출혈에 기여한 점에 대한 판단
- 팀 인원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 업무량 증가, 팀장업무 보조 업무 증가 등으로 업무량 증가, 본인 실수에 대한 문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볼 것인가.

4) 취소의 주요 근거

팀원 감소로 인한 업무량증가, 팀장에 대한 업무보조, 문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가 경증의 고혈압이 있던 원고의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앞 당겼다고 판단함.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098
6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2982
	3심	대법원 2014두13515

〈사건요지〉 사건 3개월전부터 객관적인 업무량의 증가, 악성민원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2011년 4월 8일 오전 11시경 민원상담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낀 후, 병원으로 옮겨져 "자발성뇌내출혈"로 진단 받아 요양신청을 함. 이에 피고는 근무경력상 근무환경에 적응하였고, 발병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어서,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1989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함. 사건 1년 전에 보험료징수 업무로 보직이 변경됨. 또한 사건 3달 전에 보험료 인상으로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음. 사건 3달 전 업무량이 2배가량 증가함. 사건 처리 건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함. 장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초과근무수당은 월 8시간으로 한정하여 받고 있었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피재자의 근무는 과로가 아니며, 20년간 근무를 해온 점을 보면, 충분한 적응되었다는 주 장 →〉 적응 평가
- 원고의 객관적인 과로의 증거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민원 건수 증가라는 객관 적인 과로 증거에 대한 평가.
- 민원 상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평가하지 않음.

4) 취소의 주요 근거

사건 3개월 전부터 객관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고, 악성민원의 증가가 확인되어,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함.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7629
8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629
	3심	대법원 2015두1830

〈사건요지〉도시철도공사 입환 작업자로 사건 당일 평소보다 4-5배 증가한 작업건수, 매우추운 날씨,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함에 따른 정신적 부담,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영향을 미쳐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55세 남성, 2000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사, 2006년부터 차량검사 파트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3조 2교대 근무 시행. 2011. 12. 26.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 내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경동맥의 협착에서 기원한 뇌경색" 진단 받음. 질판위는 발병 당일 평 상시에 비해 업무량의 증가는 있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경동맥 기시부 폐쇄는 만성적으로 진행된 병변으로 보아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담당업무는 1) 전동차 운행준비, 전동차 출입고 확인점검, 운행점검 시행, 2) 전동차 검사 및 경정비, 3) 본선 운행 중 민원사항 및 차량기동 중 고장 조치, 4) 전동차 구내 입환업무 5) 전동차 관리시스템 입력 등.

3조 2교대 근무. 1주차 주 5일 주간근무(9-18시). 2,3주차 야근(18-9시, 휴게시간 6시20분 -7시, 2시30분 - 4시30분, 8시-8시30분) 후 비번.

사건 당일(12. 26) 동료1인과 함께 20건의 입환업무 수행. 10월 평균 2.7건, 11월 평균 2.2 건, 12월 평균 4.7건.

당일 기온은 최고 -3도, 최저 -12.4도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1심은 1) 원고의 만성질환인 뇌경동맥협착 및 폐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2) 입환 업무는 평소에 수행하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입환 업무건수가 늘었다는 것으로 업무 전체의 양이나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상병 발생 무렵 근로시간이나 업무환경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4) 발병 전 1주일 사이 원고의 근무일수는 3일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 2심은 평소보다 4-5배 입환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연동된 다른 업무역시 증가, 고도의 주의력과 시간 내에 입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 매우 추운날씨, 장기간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함 -> 기존의 뇌경동맥 폐색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 인정
- 기존의 위험 (뇌경동맥 폐색)에 대한 판단
- 업무량 증가에 대한 판단 작업건수의 증가의 인정 여부

- 추운 날씨와 정신적 부담 고려 문제
- 4) 취소의 주요 근거 입환업무의 증가가 기존의 뇌경동맥 폐색이 뇌경색으로 악화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883
9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48264
	3심	대법원 2014두41619

〈사건요지〉 첫 해외근무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과 아프리카 근무와 말라리아 연관성 인정함.

1) 사건개요

62세 남성, 광산의 자원개발 업무로 카메룬에 출장 근무 중 2011. 12. 25.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심장질환과 말라리아 둘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혈액검사에서 말라리아가 확인되었고 증상은 있었으나 다른 장기 손상 등 중증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직접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량 증가내역이 없으며 작업환경 변화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2011. 7. 16부터 사망일까지 카메룬에서 근무. 2011. 12. 4 까지는 주 6일 (일 8시간) 근무. 12. 5. 부터는 2교대 근무 (주간 7시 30분-15시30분, 야간 15시 30분-23시 30분) 중 야간 고정 근무.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공단 자문의 3명(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심장내과) 모두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해 인정취지로 자문하였음
- 질적인 측면 중 국외 근무라는 낯선 환경에의 적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야간근무를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

4) 취소의 주요 근거

말라리아 감염은 근무 지역과 무관하지 않음. 첫 국외근무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음.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면서 근무환경의 변화 있음. 12. 19. 밤샘작업.

4.0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551
10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1864
. •	3심	대법원 2014두41664

〈사건요지〉 배선업무를 수행.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 2011년부터 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함. 29세의 젊은 나이로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사망의 연관성 인정함.

1) 사건개요

배선관리 업무하던 29세 남성으로 2011. 8. 15. 자택에서 사망. 부검 결과 심장 비대, 심근세포 비후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는 연장근로에 대해 출퇴근카드 등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기록(연장, 휴일, 연차 등)을 살펴보면 연장 근로 내역은 없었으며, 발병 전 3개월 간 대중교통카드 현황에서도 주 5일 근무로 인한 휴일인 주말에는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어 불인정. 의학적으로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며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심장급사로 사료되며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다고 봄.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배선관리 업무는 제품의 수출입 일정에 따라 선박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 2009년에는 5명이 근무하였으나 인력이 점차 줄어 2011년 2-3명이 근무. 근무시간은 8시-18시30분. 피재자는 평균 주 2-3회 22-23시에 귀가하기 위해 회사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탐. 배선관리 업무의 실질적 총괄 차장이 2011. 8. 2부터 24까지 진급휴가 ->피재자와 동료가

2011. 8. 14. 선적 착오 사건 발생. 원만히 해결되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주말에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전담.

- 재심사위 자문의는 부검결과 심근세포 비후 소견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기존질병에 대한 판단 문제
- 1심 : 입사 이후 3년 7개월 가량 배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적응에 대한 해석 문제
- 인력감축으로 인한 처리업무의 증가에 대한 판단문제.

4) 취소의 주요 근거

2011년부터 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하면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해 왔고, 인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봄. 2주 전에는 부서장까지 휴가를 떠나 사원인 피재자 책임 증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사망의 연관성 인정.

4.4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352
1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39
• •	3심	대법원 2015두38771

〈사건요지〉 조경업무근로자.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 추정. 공단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로 보았으나 예초기 작업 등 육체적 노동강도를 인정

1) 사건개요

조경업무하던 37세 남성 노동자로 2012. 9. 18. 예초 작업을 하던 중 가슴 답답함과 구토증세로 병원 이송되었으나 사망. 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7일 중 5일간 근무하였으며, 추석특수로 인해 일주일에 3번 정도 상황에 따라 19:00에서 20:00까지 야근하고 일요일에도 작업했으나, 야근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봄.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은 2012. 7월(총 31일) 근무일수 23일, 2012. 8월(총 31일) 근무일수 17일, 2012. 9월(총 18일) 근무일수 14일이며, 2012. 8. 1. 핸드폰 메시지상 오후 9시 넘어서도 잔업을 한 것과 2012. 9. 6. 카톡메세지상 일이 벅차 완전기절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비록확실하지는 않지만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발생으로 판단.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도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음.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2012. 7. 경부터 무더위 속에서 추석특수로 인해 증가된 업무량. 피재자가 근무했던 여름 동안 오후 8시 이후에 끝난 경우가 총 10번 가량임.

근무시간 7시-18시 (간식시간이 오전/오후 30분씩. 중식시간은 1시간) 우천시 휴무 작업강도가 높아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 정기적으로 환으로 된 정제염을 아침/오후 업무 시작전 1알 복용함

기존 질환 : 2006 검진 혈압 150/100, 혈당 110, 2011. 상세불명 고혈압 진단 (180/140)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기존질환에 대한 해석 → 자판부에서 정기적인 진찰이나 투약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임.
- 조경업무의 육체적 강도 인정 문제. 예초작업 중 증상 발생됨
- 추석 특수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인정문제
- 부인과의 문자내용 '일이 힘들어 녹초가 되어 잠들었다'를 고려한 점

4) 취소의 주요 근거

기존 질병은 있었으나 고된 작업, 업무량 증가를 인정함.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495
12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1793
• —	3심	대법원 2015두37655

〈사건요지〉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 후 사망. 뇌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급성 스트레스를 인정하여 2심에서 인정됨

1) 사건개요

통신기기 유지 보수 업체에서 일하던 26세 남성으로, 2012. 4. 30. 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짐.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총 초과근무시간은 19시간 50분. 토요일 근무후 일요일 휴무. 월요일 06시 44분, 상사의 출근 독촉 전화, 이후 집 앞으로 찾아와 다시 언성을 높이며 독촉전화 이후 사건 발생. 질판위는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적인 출혈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업무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주5일 근무. 9시-18시. 연장근무 함. 사건 발생 직전 일주일 근무시간은 59시간 50분.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은 큰 변화 없음. 사망 당시 만 26세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기존질환에 대한 해석 ->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로 볼 것인가.
- 2년 10개월간 근무를 해오고 있어 익숙한 상태였을 것 -〉 적응에 대한 판단
- 평소 주 40시간 근무에서, 발병 전 1주일은 59시간 50분 근무로 30%이상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상사가 집 앞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한 것의 급성 스트레스 인정 여부

4) 취소의 주요 근거

토요일 외근 근무를 환경의 변화로 인정, 1주일 간의 업무량 증가 인정, 사고 당일 상사의 독촉전화를 급성스트레스로 인정.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만 26세의 젊은 나이.

4.0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425
13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62441
. •	3심	대법원 2015두39521

〈사건요지〉 재해 당일 평소보다 빨리 출근하여, 추운날씨에 평소 업무와 다른 고강도 육체 노동을 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입출고 관리하던 63세 남성노동자로, 2011년 1월 23일 19:40분 경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 쌓여 있던 눈을 치우던 중 20:30분 경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병원에 후송되어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치료받던 중 2011년 4월 13일 사망함.
- 진단명, 신청상병 : 'Q파 심근경색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생한 급성심장사, 인공 심폐소생술 후 상태'
-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사인 :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심사 기각, 재심청구 기각

2) 망인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 망인은 ○○구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 2월 5일 입사하여 견인차량의 입출고 관리 및 민 원업무를 수행함. 주 6일 52~57시간 근무. 평일 8~9시간/일, 주말 중 1일 12시간/일.
- 사건 발병 당일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 빨리 출근하여, 넉가래로 주 차장 제설 작업함. 제설작업 시작한지 약 50분 지난 후에 쓰러진 채 발견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① 신체적 과중 업무 여부
 - 공단 : 망인이 통상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 업무 부담이 없었으며,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 : 사건 당일 추운 날씨에서의 한 시간 가까운 제설작업은 평상시 고강도의 육체 노동을 하지 않던 고령의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②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 여부
 - 공단 : 고령, 흡연, 고지혈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 법원 : 망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는 정상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낮음.

4) 취소의 주요 근거

사건 당일 추운날씨에 평소와 달리 급격한 육체노동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함.

15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493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68432
. •		

〈사건요지〉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당일 과로와 무거운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발견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2012년 10월 27일(토) 출근 후 정상근무하였으며, 퇴근 시간이 지나도 피재자가 돌아오지 않자 유족이 23:00경 경찰서에 신고, 가족들에 의해 다음날인 28일 01:00경 피재자가 평소에 일하던 쓰레기분리작업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뇌출혈' 진단 받고 수술 및 치료 중 31일 같은 원인(뇌출혈)으로 사망함.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지 아니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보아 불승인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2011.11. 1. 수상운수업 회사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
- 작업 내용 : 선착장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사무실 주변 거리청소, 관광선에서 배출된 쓰레기 분리수거 등
- 통상 근무시간 : 약 52.5시간/주5일 (하계 08:30-18:00, 동계 09:00-17:00, 화목 휴무)
- 단풍구경 행락객 증가로 인한 가을철 업무량 증가

(피재자가 처리하는 쓰레기 양 : 비수기-대형봉지 2~3개/주, 성수기- 손수레 2~3대 분량 인 대형봉지 10개/일),

(유람선탑승객 수가 2002년 9월 평균 154명/일->10월 평균 442명/일. 재해당일 873명)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① 업무 과중 업무 여부 : 법원은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 급증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 하였다고 봄. -> 노동시간 외 업무량 평가
- ② 개인질환의 악화 : 법원은 고혈압, 당뇨병 앓고 있었으나 꾸준히 치료받았다고 평가함.
- ③ 사업주의 관리소홀: 법원은 근무지에서 업무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음에도 사업 주 측으로부터 구호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봄. 퇴근시간이 한참지난 다음날 새벽 1시에 발견. CT촬영 상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4) 취소의 주요 근거

피재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사업 주의 관리소홀 등이 더해져 발생함.

16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222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5668
. •		

〈사건요지〉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한 상태에서 주말에 영업 업무 일환으로 등산 도중 발생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 제약회사 영업직, 52세 남성으로, 2012년 4월 28일(토) 10:30분 경부터 거래처인 병원의사 및 직원들과 등산, 약 40여분 후 흉통, 식은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휴식을 취하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12:00경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12:45 급성관상동맥증후군(추정)으로 사망.
- 질병판정위원회는 주말 산행은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심질환 자로서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기존 질병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인 발생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 의비 청구 불승인, 심사 기각, 재심청구 기각.
-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직업력: 2003. 3. 5 ~ 2009. 2. 13(사건회사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 2009. 2. 13 영업사원으로 근무, 2010. 3. 31.부터 사내이사로 근무
- 작업 내용 : 의약품 영업업무, 담당병원(대구, 부산, 광주, 대전)
- 근무시간 : 주 5일 45시간. 오전 서류작업, 오후 거래처 출장(대구 : 주 4회, 장거리 : 주 1~2회) + 주말 : 의사들과 골프, 등산
- 재해 발생 전날도 한 병원 의사들과 저녁식사 후 23:00경 퇴근. 재해 발생 1주일~3개월 에도 매일 과외근무 및 주말과 공휴일 근무를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 그러나 관할병원 의 2011. 11월과 2012 1월, 4월의 매출액이 다른 월에 비해 높은 것은 업무실적 확인됨.
- 과거력 :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 (2008. 2. 20)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① 의사들과 주말 골프, 등산의 근무 인정여부 : 법원은 피재자가 영업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거래처 의사 및 직원과 친목을 도모하여야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고, 재해일의 등산 회사는 가장 큰 거래처였으므로 업무의 일환으로 봄. 그리고 주말 거래처 병원 의사 또는 직원들과 골프나 등산시 식대 등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비용이 충당됨.
- ② 개인질환의 악화 : 법원은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잘 관리해 왔고, 외래 방문 시 심혈관 질환 악화를 시사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증세가 없었다는 데 주목.

4) 취소의 주요 근거

업무의 일환으로 주말에도 등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등산은 피재자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협심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아 인정.

18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422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22

〈사건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 건설현장소장으로 일하던 43세 남성, 2012. 10. 6. 10:10경 숙소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부검결과 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 혈(뇌저부 지주막하출혈).
- 질병판정위원회는 급성 또는 만성 과로가 아니고, 현장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직무 스트 레스 범위로 수년간 동일 업무 수행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직업력 : 2011. 8. 1. 건설회사 부장으로 입사. 2012. 4. 17 사건의 현장소장으로 부임.
- 작업내용 : 현장소장으로 현장 작업 총괄, 현장 민원 및 관공서 관련 업무, 인부 관리 등
- 근무시간 : 주 6일 51시간 + 격주 일요일 근무 + 출퇴근 2.5시간/일
- 공사기간 지연 : 농지 보상 문제로 민원 및 공사기간 지연
- 사망 2일 전부터 2건의 민원 발생 : 2012. 10. 4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회사에 약 4000 만원 손실, 2012. 10. 5 거칠게 항의 받으며 민원.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① 뇌동맥류의 선천성 질병여부 : 법원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수 있고,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뇌동맥류 발생 또는 파열 사이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② 민원발생과 회사 손실 입힌데 대한 급성 스트레스 인정 여부 : 공단은 민원 등의 스트레스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범위이고, 수년간 동일업무 수행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본 반면, 법원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인정함.
- ③ 과로 인정 여부 : 법원은 1달에 15일간 1시간 가량 연장근무, 주 6일 근무한 점도 함께 고려함.

4) 취소의 주요 근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판단함.

4.0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191
19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46029
	3심	대법원 2015두40842

〈사건요지〉 세탁보조업무를 하던 52세 남성에서 발생한 뇌내출혈에, 최근 3개월간 근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고 판단. 또한 무덥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급여지급 지연, 고용불안,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고 보아 인정.

1) 사건개요

52세 한국계 중국인 남성 노동자로 2011.3.9 모텔 침대 시트와 수건을 세탁, 건조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세탁보조업무를 하던 중 2011.7.1 뇌내출혈 진단 받음.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량을 확인할만한 매출자료나 과로를 확인할 CCTV, 출근카드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특이 사항

- 소아마비가 있어 바닥에 앉아 세탁된 수건을 개는 작업. 근무시간은 08:30-18:00시였고 점심시간 30분 외에는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고,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었음. 휴무일은 월 2일이었으나, 실제로는 4월에 5일(병가 4일 포함, 구토, 두통, 무력감 등), 5월에 1일 외에는 쉬지 않고 일함.(발병 전 34일간 연속근무) 일요일과 월요일은 물량이 많아 2시간 연장근무. 물리적 환경 : 90평 작업장 내에 선풍기 2대.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 아이롱기계 1대 가동. 환기 상태가 불량하고 무더웠다고 함. 발병당일 최고기온은 31.3도였고 작업장은 외부온도보다 3-4도 이상 더 높았고, 재해자의 작업위치에는 선풍기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입사 2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고(4월 급여 2일 지연, 5월 급여 16일 지연, 6월 급여 13일 지연), 발병 한달 전 매출 감소로 업무량이 감소해 고용불안이 있었음.
- 발병 20일전부터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아이롱 기계 담당 근로자들이 앉아서 작업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발병 20일 전부터는 매일 욕을 하기도 함.

3) 사건 특이사항 및 쟁점

- 과로의 객관적인 근거 : 34일 연속 근무, 장시간 노동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봄.
- 휴일 부족 평가 : 34일 연속 근무이나 노동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자문의 소견.
- 열악한 물리적 환경 및 고용 불안, 동료 근로자 갈등, 급여지급 지연 등 다양한 스트레스 에 대한 평가

4) 취소의 주요 근거

최근 3개월간 근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고 판단. 또한 무덥고 열악한 작업환 경과 급여지급 지연, 고용불안,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음. 또, 고혈압 병력이 있지만 2008년 이후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봄.

		•
-)	•	1
	ı	
	L	,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80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54
3심	대법원 2015두49269

〈사건요지〉 철선외장기 외장 작업 수행 도중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 1개월 전 3교대에서 2 교대로 변경되면서 노동 시간 증가, 야간근로시간의 비중이 매우 크고 그 증가 폭도 크다는 점을 들어 인정.

1) 사건개요

2013.6.4 21:20경 작업장 내 철선외장기에서 외장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쓰러져 뇌출혈을 진단받고 업무상재해로 요양승인 신청.

2)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특이 사항

- 원고는 발병 당시 배전케이블 생산팀에서 근무하면서 2012.1.1부터 배전케이블 연합공정 및 부식방지 외장공정의 두 가지 공정을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숙련된 기능공으로 두 가지 공정에 대해 작업과 품질관리(감독)를 동시에 수행했음.(두 가지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자였음) 원자재 투입 및 잔량 소요량 감시, 설비 이상 유무 확인, 전체 공정확인 업무를 하였는데, 생산 제품의 특성상 기계 규모가 방대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두가지 공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
- 불량품 방지를 위해 항상 긴장했고, 납품기일에 맞춰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이 있었음.
- 3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3.5.4(발병 한달전)부터 2교대(1주일마다 순환)로 바뀌면서 11.5 시간 또는 12.5시간 근무. 발병전 12주간 평균 47.5시간/주, 발병 전 4주간 62.1시간/주.
- 3교대 중 식사시간 30분, 2교대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2식) 외에는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발병 전 한국전력공사의 납품기일(5.31)에 맞추기 위해 업무량/시간 증가. 주말을 모두 가동하고도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 정도의 양이어서 원고의 경우 5월 중 휴무일 2일.
- 원고가 속한 배전케이블 생산팀은 총 30명인데 발병 당시에는 파견 등으로 인해 잔여 인 원이 19명이었음.

3) 사건 특이사항 및 쟁점

- 질판위에서는 개인병력(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해당되는 요 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 고혈압(2004~2010년 간헐적 진료기록. 발병 수개월 전부터는 약을 복용할 만큼 혈압이 높지 않았음), 고지혈증(2013년 2회 진료),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 보유
- 1심에서는 개인적 위험인자에 대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4) 취소의 주요 근거

-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했다고 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2.1시간으로 64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야간 근로시간의 비중이 매우 크고 2교대 기간 동안 야간근로의 증가 폭도 크다는 점, 야간근무의 경우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점 등을 인정.
-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장기간은 아니지만 2교대근무가 3교대 근무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발병 전 4주간 총 248.5시간 근무, 그 전 4주간 163 시간 근무.(152%증가)
- 고혈압은 비교적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발병 2개월 전 135/77이었는데 발병당시 187/116으로 나타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0.4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596
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9202
	3심	

〈사건요지〉 39세 영업관리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뇌간부출혈에 대해, 입사와 동시에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곧바로 수행하는 급격한 변화를 인정하여 입사 12주가 되지 않았으나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피재자는 만 39세로, 2012.12.1 C주식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품질관리 및 영업관리를 담당하다가 2013.1.9 18:50경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뇌간부출혈로 사망.

2)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특이 사항

- 품질관리팀과 영업관리팀의 과장을 겸직. (전 직장에서는 두 팀에 각각 과장급 직원 1인 이 각각 배치되어 총괄)
- 품질관리팀 직원은 4->5명으로 증가했으나 영업관리팀은 피재자 1명 뿐이었음. 이 회사 입사 전에는 영업관리 업무 경험이 없어 입사 후 12월동안 인수인계 받고 1.1일부터 피재 자 혼자 영업관리 업무 수행.
-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발병 1일전 12시간, 2일전 14시간 근무, 발병 전주 43시간 21분 근무. 입사 후 한달간 주당 61.5-66.5시간 근무.(평균 64시간 미만)
- 피재자는 입사 후 매주 토요일에 출근했고, 일요일에도 출근하기도 함. 대통령선거일과 성탄절에도 근무.(실제 근로시간은 표에 제시된 것보다 길 것으로 추정.)
- 품질관리팀 직원들이 돌아가며 20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지만, 피재자는 입사 후 평일에 20시 이전에 퇴근 한 날은 4일.
- 2013.2월에 예정된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품질인증 평가 준비를 해야 했고, 이전 직장을 고객사로 대해야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

3) 사건 특이사항 및 쟁점

- 고혈압 병력: 2006년 150/100, 2012년 건강검진시 170/120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 혈압으로 판정받았으나 약물치료 기록 없음.
- 판정위 결과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불승인.

4) 취소의 주요 근거

- 피재자는 입사한지 12주가 되기 전에 사망했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 규정으로 보아 야 하므로 반드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가 12주 이상 지속되어야만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 피재자의 경우 직장이 없다가 입사와 동시에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곧바로 수행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강도 높은 근무시간이 사망 전까지 지속되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정
- 위 고시는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피재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고 봄.
- 만 39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 고려.

$\mathbf{\cap}$	\cap
1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732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52
3심	

〈사건요지〉 납품업체 관리하던 53세 노동자의 뇌경색에 대해, 원거리 출퇴근이 잦은 노동 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일부를 노동시간으로 산정하여 인정.

1) 사건개요

S중공업 소속 53세 노동자로 2013.5.27 10:00경 협력업체 면담 중 입이 돌아가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우측편마비, 실어증 진단.

2)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특이 사항

- 납품업체(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로,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과 납기를 점검하는 일. 창원, 김해, 울산, 부산에 위치한 15개 업체를 관리. 출장 후 퇴근하여 사내전산망에 접속하여 출장결과 보고. (발병전 12주간 출퇴근 포함 평균 1일 이동거리 173km.)
- 근무시간은 08:00-17:00였으나. 발병전 1주 59시간 21분, 발병전 4주간 60시간, 발병전 12주간 57시간 50분. (피재자 측은 주당 70시간 이상이라고 주장)
- 주5일 근무이나 2013.1월부터 5월까지 월별 평균 휴일근무 일수는 4.6일.
- 2012년 말부터 FLNG프로젝트에 결합하여 관련 납품업체 관리 업무 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은 서둘러야한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재해자는 FLNG프로젝트 선주의 요구 수준과 협력업체가 현실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준 사이에서 이를 조율하느라 업무부담과 업무량이 증가. (FLNG프로젝트의 설비는 세계최초 제작. 항공모함 6척 정도의 대규모. 선주가 감리인 400여명을 파견하여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 (일반 배 감리인 2-10명))
- 발병 3개월전 재해자가 담당하는 협력업체 중 한곳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어 재해자를 포함해 관련자에 대한 감사 진행.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혐의는 벗었으나 업체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

3) 사건 특이사항 및 쟁점

- 츨퇴근시간, 출장시 이동거리를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가.
- 원고-피고의 업무시간 산정 결과가 다름.

4) 취소의 주요 근거

- 노동부 고시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한 장시간 근로에 해당.
-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와 협력업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의 출퇴근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일부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7	Δ	
	П	Γ

1심	창원지법 2011구단2140	
2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577	
3심	대법원 2014두13874	

〈사건요지〉 냉동설비 제조 업무를 하던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뇌출혈

1) 사건개요

2010.3.2 해당회사 함안공장 생산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3.11.8 14:30경 작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편마비, 자발성뇌출혈 진단받음.

2) 피재자의 작업내용 및 특이 사항

- 2010.3.2 해당회사 함안공장 생산부 부장으로 발령. 냉동설비제조업무 중 열교환기 오일 쿨러 제조 및 조립 담당조 조장으로 작업지시 및 제작 업무(사상,제관,용접 등) 담당. 사업장 내 공장설비 관련 작업도 함.
- 근무시간은 08:00-17:00(월-금), 08:00-15:00(토). 필요한 경우 19:30까지 연장근무. 점심시간은 12:00-13:00. 재해자의 평소 주당 근무시간 51시간 20분. 발병 1개월 전 44시간 30분, 2개월 전 42시간 30분, 3개월전 64시간의 연장근무.
- 발병 전 3개월간 토요일, 일요일 합계 26일 중 23일 휴무.
- 4가지 프로젝트(p171)가 중첩되어 진행되었고, 입고되는 자재가 부족함에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상사와 다투기도 하는 등 스트레스.

3) 사건 특이사항 및 쟁점

- 질판위 : 발병 전일 휴무 했고, 장/단기간동안 일상 업무보다 특히 과로한 사실이 없으며, 뇌출혈 상태도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 (밑줄친 내용 자체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 오류)

4) 취소의 주요 근거

- 발병 무렵 4가지 프로젝트가 중첩되어 진행되었고,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의 시간과 강도 는 평소에 비하여 과중했다.
-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인데, 재해자는 고혈압이 없었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발병 후에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반면 재해자는 발병 후 병원에서 측정 한 혈압이 정상이었음.

	1심	창원지법 2012구단1519
25	2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297
	3심	대법원 2014두11779

〈사건 요지〉회사 내 유일한 자동용접자격자로서 납품불량 문제로 자격의 박탈-재취득 과정에서 월평균 60시간의 잔업에 4회 정도의 특근을 하였고 불량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실신,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해당업무에 적응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또한 기존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파열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1) 사건 개요

- 삼성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자동용접공(남성, 만54세, 160cm, 57kg)으로 2011년 10월 25일 14시경 용접 작업 확인 중 머리가 흔들거리는 징후를 보이다 철판에 누워 구토를 하면서 급격히 의식이 떨어졌고 치료 받던 중 2011년 11월 4일 뇌동맥류 파열(직접사인: 뇌부종 및 뇌탈출 중간성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전교통 동맥))로 사망
- 이에 공단은 일상 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정신적 스트 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된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사내하청업체 내 유일한 자동용접공으로 발병 전 납품불량의 책임을 지고 자격 박탈, 이로 인해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수동용접작업이나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자격을 재취득한 뒤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4일 전에는 오른쪽 눈에 충혈이 생겼으나 일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주말 특근을 강행, 발병 전 2개월간 각 65시간, 67시간 초과근무하였고 1주전에는 20시간 초과근무에 이틀 특근
- 기존질병으로는 2년 전 안면마비로 2주 입원후 완치,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16mm 정도의 동맥류 기저질환, 1년 전부터 비흡연, 음주는 월2회(소주 2-3잔 정도)

3) 사건의 특이사항 및 쟁점

- 자격박탈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하지 않다고 본 점
- 발병 전 2개월 간 각 65시간, 67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과로로 판단하지 않음 점
- 11년간 일하면서 숙련공으로 해당 업무에 적응도가 높았다기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 과로나 스트레스와 자발성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한 점을 들어 불승인
- 심사-재심사 기각

4) 취소 근거

- 11년간 일하면서 숙련공으로 해당 업무에 적응도가 높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자격의 박탈-재취득 과정에서 유일한 자동용접사로서 불량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았고,
-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나,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파열돼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 1심 판결 취소

5) 기타

- 부검 여부 미상

_	_
\cap	\mathbf{C}
	$\boldsymbol{\varkappa}$
	U

1심	창원지법 2013구단827	
2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116	
3심		

〈사건요지〉 철구조물 및 샤시 제작·설치 작업 책임자로 공사 마감 시한이 임박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다 숙소에서 잠자 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 노동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를 추정하여 과로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사건 개요

- 철구조물 및 샤시를 제작·설치하는 업체의 부장(남성, 46세, 176cm, 64kg)으로 준공시한을 앞두고 휴일없이 근무하다 2011년 5월 5일 04시경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잠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을 받음
- 이에 공단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 없고, 숙소에서 잠 자던 중 발병한 것이며, 개인의 상당한 흡연과 음주습관이 뇌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부장 직책으로 자재 구입 및 조달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나 하자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발병 기준 1개월 이내 휴무일 없이 근무, 공사 마감 시한이 임박해 업무량이 대폭증가, 발병 10일 전부터는 사업장 인근 동료의 직원 숙소에서 함께 숙식하며 근무, 발병 일주일 전에는 이틀 연속으로 22시까지 시간외근무
- 기존질병으로는 종합건강진단 결과 상 간기능 수치(감마 지티피)가 상승된 것 이외에 기 저질환이나 기왕력이 전혀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1주 4-5회 정 도 1주 합계 소주 2병 정도의 음주

3) 사건의 특이사항 및 쟁점

- 발병 전 2-3개월 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출근대장 등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로를 뒷받침할 만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점
- 오히려 원고의 흡연 및 음주습관이라는 사적인 원인이 발병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 심사 기각

4) 취소 근거

- 근무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4월 경(발병 전 1개월 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하면, 1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발병 10일 전부터는 공사 마감을 앞두고 사업장 인근 동료 직원의 숙소에서 숙식할 정도로 근무하는 등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심각하게 초과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추인하였고,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또한 발병 전 1개월의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해 간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

5) 기타

- 노동시간(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출근대장 등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미 상

- 1	
	. •

1심	창원지법 2013구단10091
2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963
3심	

〈사건요지〉물류회사 소속 54세 운송 기사로 야간 시간대에 주로 운송을 하였고 갑작스러운 운송 부담으로 상차 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 특성들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가능성을 인정.

1) 사건 개요

- 물류회사에서 트레일러로 조선 기자재를 운송하는 기사(남성, 만54세, 160cm, 57kg)로 2011년 12월 28일 19:30분 경 기자재를 상차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
- 이에 공단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한달 평균 21.5일 근무, 하루 평균 2-3회의 화물 운송, 운송시간은 주로 야간 시간대(새 벽 1시부터 6시까지), 주간에는 2-4시간 정도만 하고 보통은 야간 근무, 컨테이너에서 숙식 하면서 상시 대기하다가 운송지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송업무 수행
- 사망 전날에는 5회의 화물 운송, 사망 무렵 상당수의 소속 운송기사들이 그만둬 운송업 무 부담 증가,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장거리 경로 운송으로 작업 환경이 상당히 변화
- 기존질병으로는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기저질환 없음

3) 사건의 특이사항 및 쟁점

- 최초 신청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었고, 재심사청구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 1심 판결에서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기각
- 1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사실조회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를 2심에서는 반영
- 심사-재심사 기각

4) 취소 근거

-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무 현황 자료는 없는 상태이지만, 또한 부검을 실 시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대한직업 환경의학회의 사실조회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기초해) 과거력이 없었음에도 돌연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사 한 것은 야간운송 업무, 불규칙한 생활, 수면부족, 갑작스런 운송업무 부담, 운송 업무 자체의 긴장도 등이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판단하여 1심 판결 취소

- 5) 기타
- 부검 미실시

۱
,

1심	대구지법 2014구단10290
2심	
3심	

〈사건요지〉 53세 굴삭기 운전기사로 급격하게 증가한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2개월 동안 휴무일이 7일에 불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혈관 퇴행성 변화와 관계없이, 급격한 업무 증가나 책임 있는 지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혈관 폐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

1) 사건 개요

- 굴삭기 운전뿐만 아니라 현장 팀장(남성, 만53세, 174cm, 74kg)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출하량을 맞추느라 과로를 하였고, 팀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와 장비 고장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부품교체작업을 직접 하는 등 계속되는 힘든 작업으로 상병 발병하여 사망
- 이에 공단은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발병 전 1주일 주당 69.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1.1시간 근무, 팀원들이 휴일-연장 근무를 거부하면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혼자 작업하기도 함
- 납기를 제대로 맞추기 못하면 거래처인 레미콘 회사에서 골재 공급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주문 물량과 납기를 맞추는 게 필수적이었고 이에 피재자는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겪음
- 발병 전 2개월 동안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휴무일이 7일에 불과, 급격히 늘어난 주 문량을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씀, 장비고장으로 현장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에는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등 장비 수리작업까지 담당
- 기존질병으로는 이상지질혈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 없음, 음주는 하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 미만

3) 사건의 특이사항 및 쟁점

- 공단 자문의는 심장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

4) 취소 근거

- (공단 자문의의 소견과 달리) 기왕증이나 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급격한 업무 증가나 책임 있는 지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단기간의 급격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이 매개되어 갑작스러운 혈관 폐색이 일어나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
- 5) 기타 : 부검여부 미상

0.4	1심	대구지법 2014구단743
31	2심	대구고등법원 2015누5321
	3심	

〈사건요지〉생명보험회사 대출담당으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40세 남성 노동자, 업무가 한정된 시간 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발병 3개월 전부터 담보대출 업무량 증가 및이로 인해 상당한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압박이 있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만 40세 남성으로, 2013년 6월 13일 야근을 한 후 23:00시 경 귀가하고 다음날 07:45분경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서 8.11. 심실세동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공단은 건강검진 기록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고, 과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한 사례임.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회사에서 업무성격상 1년 단위로 담당자를 교체할 정도로 힘든 업무로 인정하였으며, 발병 3개월 전부터 담보대출신청의 급격한 증가 및 보조직원의 일찍 퇴근 등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이 2~3배 증가하였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피고가 불승인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피재자가 건강검진기록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의 객관적 기록 및 기준 미달이었음.
- 당초 업무의 성격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1년 단위로 담당자를 교체할 정도라고 하면, 업무의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등에 대해 심리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보임.
- 대출심사건수 및 접수금액으로 볼 때, 최소 2내지 3배의 업무량 증가의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과로기준에 미흡하다고 일률적으로 불승인했던 것으로 보임.

4) 취소의 주요 근거

- 피재자의 업무성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피재자의 담보대출건수 및 금액에 있어 2 내지 3배의 객관적 증거를 인정하여 과로 스트레스의 악화로 인한 재해로 판단함.

_	_
٦,	ر -
J	L

1심	수원지법 2012구단1031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19176
3심	

〈사건요지〉 12주간 1주 60시간 이상 근로 및 금형설계 업무 이외 생산관리 업무도 담당하던 46세 남성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뇌경색이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금형회사에서 근무 중 일요일 특근과정에서 쓰러져 '중대뇌동맥 경색, 온경동맥-내경동맥 협착'의 진단을 받아 요양 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만46세 남성으로, 동종업계에서 20년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금형설계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입사함. 발병 전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 금형설계업무는 정신적 부담업무이며, 생산관리 업무도 추가로 담당하고 있었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발병 13주 간 근무가 770시간(1주 6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성과로로 판단하지 않았음.
- 노동 시간 외에 업무상격의 특이성(정신적 부담업무) 및 추가업무로 인한 과로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 입사 이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의심 판정이 있었으나, 입사이후 정상적인 근무를 해 왔었 던 상황에 대해 평가를 달리함.

4) 취소의 주요 근거

- 업무시간에 있어 명백한 만성과로의 상황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업무의 성격 및 추가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한 것임.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832
33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76
	3심	대법원 2014두13652

〈사건요지〉 조경작업을 하던 45세 남성 노동자에서 발생한 소뇌출혈에 대해, 스텐트 삽입 시술상태로 26일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그 중 11일 동안은 추가근무까지 하면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 만 45세 남성으로, 2010. 12. 29. 조경회사에서 입사 후 2011. 6. 24. 작업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소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뇌연수마비로 2011. 7. 1. 사망하여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기존질환과의 관련성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사안임.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발병 전 26일을 외딴 섬에서 조경공사 반장업무로 인해 연속근무를 하였으며, 이 중 11일은 추가업무를 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발병 전 26일을 연속 근무(근무시간 : 07:00~17:00)하였으며, 이 중 11일(19:00~21:00) 은 연장근무까지 한 상황을 과로로 평가하지 않은 점.
- 집이 아닌 외딴 섬에서 숙박을 하면서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 법원은 보다 과로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공기가 연장된 것에 대해 1심 법원 및 공단은 스트레스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유발된 것으로 판단
- 입사 전 심장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상황에서 보다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 즉 개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4) 취소의 주요 근거

- 업무시간에 26일 연속근무 및 11일 연장근무 상황에 대해 과로로 인정하였으며,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다 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판단한 것임.

2/	
J 4	ŀ

	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274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8126
Ī	3심	대법원 2014두13652

〈사건요지〉심한 질책 및 이로 인한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악성고혈압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발병 당일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병원에서 혈압 252/140mmHg로 진단된 후, 다시 돌아와 근무하다가 쓰러져 '경련발작, 대사성 뇌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뇌경색, 급성심부전'으로 요양 신청.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력이 확인되고 발병 전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아 내재된 대사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하여 불승인된 사안임.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원래 연구원으로 근무 중 영업직으로 근무 중 발병 1개월 전부터 신규 거래처 발굴 및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상황에서, 발병 당일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이로 인해 머리가 아파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252/140mmHg로 진단된 뒤 다시 돌아와 근무하다가 쓰러진 사안임.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이전 고혈압(2009년 170/90)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며, 병원 내원 당시 급격히 악화된 혈압상태를 이전 고혈압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 심한 질책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악성 고혈압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감정의의 소견이 판단 근거가 됨

4) 취소의 주요 근거

- 1회의 심한 질책 및 이로 인한 급격한 혈압의 변화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황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함.

~	h
J	J
_	_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680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2973
3심	대법원 2015두45120

〈사건요지〉 발병 전 새로운 조립업무를 담당하여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주야간 교대제를 담당함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을 가진 피재자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되었고, 재해 전 3일은 연속근무를 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 1994. 9. 27. 만도에 입사하여 근무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237일간 요양하였으며, 이후 2011. 5. 16. 새로운 부서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 30. 21:15분경 회사에서 쓰러져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뒤 2012. 2. 4.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 공단은 "발병전 설날 휴무기간(6일) 이후 3일간 특근 및 초과 근무한 내용이 확인되나,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 특별히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발병 전 추간판탈출증(요추)으로 요양 이후 복귀하였으나,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발병 8개월 여 전부터 주야간교대제 근무를 하는 새로운 부서에 배치됨. 새로운 부서는 목표량이 할당되고, 수작업으로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였음.
- 평소 주야간이 바뀌는 기간인 2일에는 휴무하였으나, 발병전 3일에는 주간근무, 2일 전에는 휴일주간근무, 전일에는 야간근무를 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1심은 발병 전 8개월 여 기간 동안 종사한 주야간 교대제 근무시스템에 적응한 것으로 보았고, 질판위에서는 교대근무에 대해 판단 자체가 없음.
- 작업부서의 변화 및 부서의 업무성질이 기존 업무에 비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했다고 보임.
- 재해 발생전 3일 연속근무 상황 및 야간근무시 실질적 업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인 지에 대해 파단
- 디스크를 가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내내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심리 판단

4) 취소의 주요 근거

- 기초질환이 없으며, 재해 전 3일 연속근무의 과로 상황 인정 및 주야간교대제의 뇌출혈 과의 관계, 업무의 성격 및 디스크를 가진 근로자에게 보다 상당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함.

~	L
_)	()
	$\mathbf{\mathbf{\mathcal{U}}}$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755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84
3심	대법원 2014두47822

〈사건요지〉 29세 남성,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관광버스 운전 업무의 추가 등 과로 스트 레스로 인해 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29세 남성으로 2009. 8. 31. 여행사 버스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20009. 11. 28. 21:00경 회식을 하고 익일 01:30분경 귀가 중 쓰러진 이후 03:05분경 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 급성심근경색.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 공단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기존 위험요인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 출근버스 운행 중 대기시간을 있었으며, 공단에서는 이를 근무시간으로 산입하지 않았음.
- 2009. 10. 17.부터 주말 관광버스 업무가 추가로 부여됨. 이로 인해 209. 10. 12.부터 사망시점까지 2일의 휴무(10.18., 11.8)만 가질 수 있었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출근버스 운행 중 회사 내 기사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대기실 환경의 열악성 및 1주 1~2회 차량운행 사실을 근거로 이를 인정함.
- 사망 5주전 주말 관광버스 운전이 추가되었고, 당해 기간 중 2일 휴무 사실에도 업무량 증가 및 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버스 운전 업무의 성격을 항시 긴장 및 집중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판단(2심)
- 고혈압이 있었으나 사망 전 혈압 110/80이었고, 당뇨는 꾸준히 투약했다는 사실과 29세 나이로 볼 때, 기존 질환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공단의 판단이 기존 질환을 과대하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4) 취소의 주요 근거

-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을 보아 평소 과로 사실 및 발병 5주전 주말근무 및 이로 인해 상당한 과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고혈압의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당뇨 투약사실을 볼 때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생되기 어려운 것으로 봄.

_	
7	7
_5	

1심	서울행정법원 2013 구합 59989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누 55535
3심	

〈사건요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아파트 시설관리원이 지속적인 격일제 근무와 열악한 휴게 환경, 사건 발생 직전의 제초작업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판단.

1) 사건개요

- 53세 남성, 1200명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1. 아침 출근하여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다음날인 2012. 9. 22 아침 교대근무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9. 29.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중간사인 고도의 뇌부종, 직접사인 뇌기능 상실로 사망함.
- 재해발생 전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도 없었고, 입사이후 과로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건강검진내용상,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의심, 고혈압 진료 확인, 흡연 및 음주를 해 온 것을 들어 불승인. 심사, 재심사 청구 모두 기각.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 사항

- 24시간 맞교대로 경비 업무 수행함.
- 1년에 두 차례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 시기가 제초 작업 시기로 전 근무일인 9.19와 9.21에 모두 제초 작업을 수행함. 제초 작업 당시 습도가 높고 비교적 더운 날씨인데 안전을 위해 긴 옷 착용, 예초기를 메고 일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1심에서도 원고 패소. 경비 업무 특징상 근무시간인 24시간 동안 주로 대기하며, 밤 12 시부터 5시까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봄. 2심에서는 4주간 238시간 근무 로 파악하고, 격일제 근무의 건강영향을 고려함.
- '9월 19일 제초작업 후 9월 20일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했다고 본 것은 잘못된 평가임. 비번이고, 휴일이 아님.
- 고등법원에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1심은 휴게실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나 휴식을 취할 수는 있었다고 보았고, 2심은 휴게 실이 있었으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에 주목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로가 있었다고 봄.
- 자문의 2명의 의견이 달랐고, 각각의 판결에서 같은 견해만 반영
- 1심에서 동맥류 파열이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

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4) 취소의 주요 근거

- 격일제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 휴게실 환경도 열악,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순간적으로 혈압 상승시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과 자문의 소견 반영.

	$\mathbf{\cap}$
_ ≺	$\boldsymbol{\times}$
J	U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6081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67767
3심	

〈사건요지〉생산관리직 40세 남성 노동자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만성 과로와 공장 이전과 인증 심사 등 최근 업무 양과 환경의 변화가 함께 발생하여, 심근경색증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 40세 남성, 2013년 4월 15일 야근 후 20시경 퇴근하여 지인의 개업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슴이 너무 아파 여인숙에 잠시 쉬러 들어갔다가 23시경 심실빈맥(시체검안서 상의 사인)으로 사망함. 근로복지공단은 ①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했거나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가 없고, ②사인이 불명확하며 ③기존 개인질환인 '이형성협심증, 심근경색'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가 있었다며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의료용품 생산업체의 생산부 총괄 과장으로 5년 근무.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출근, 주중 2시간 연장근무 후 생산직 직원 태워다 주기, 월 2회 토요일 근무 등으로 사망 전 1주간 64시간, 4주간 평균 61시간, 12주간 62.3시간임.
- 2013.2초~4초 사이에 공장 이전하여 설비 고장과 시운전, 이로 인한 재고 확보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음. 2013. 3 한달 동안은 한국식약청 인증 심사 준비로 역시 스트레스가 많았음.
-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으로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 등을 자주 하였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3년 전(2010) 급성 심근경색, 이형성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입원, 수술 받은 경력 있음. 여기서는 기존질환을 취약성으로 해석하기보다,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데 중점을 둠.

4) 취소의 주요 근거

- 공장 이전으로 인해 생산부 총괄 과장인 피재자의 업무 양, 시간 및 업무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봄
- 사망 전 1주간 6시간, 4주간 평균 61시간, 12주간 62,3시간으로, 노동시간 기준 초과
- 공장 이전 당시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식약청 인증 심사 준비를 도맡아 했던 점을 인정함.
-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 등을 자주 하고, 생산직 직원들 퇴근시켜주거나, 그 후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한 적이 많았던 점 등을 인정함.
- 과거 급성심근경색 발병 사실 있으나, 이후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함.

_	_
$\boldsymbol{\gamma}$	\cap
~	Ч
	J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62787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7098
3심	

〈사건요지〉 버스운전기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이 심근경색 혹은 다른 심장질화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40세 남성, 2012년 12월 21일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호흡하지 못하다가, 흉통을 호소, 다시 20분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못 하는 증상으로 응급실 이송하였으나, 심장 마비 발생.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2013. 7.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 질병판정위원회는 심근경색이 발견되지 않아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심장정지로 판단하였는데, 심실세동을 발생시킬 소견이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선행사인 미상으로 업무관련성은 추정할 수 없다면서, 기존 개인질환 및 발병위험 요인(고혈압, 음주, 흡연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봄.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피재자는 2010. 5.~2011. 6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2011. 6~2012. 6까지 중형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대형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하고 6개월째임.
- 격일제 근무, 총 36km의 노선을 하루 8회 운행 원칙(1회당 1시간 40분~2시간). 1일 운행 시 약 17시간 운전, 3일 연속/2일 연속 근무하는 날이 있음.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주 간 63시간 58분, 12주간 68시간 42분으로 계산함.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질판위는 급성심근경색보다 심실세동을 심장마비가 발생한 원인으로 봄. 2심은 심근경색 개연성을 가장 높게 봄.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진단이 불확실해 '업무와의 관련성은 추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동시에 '기존 개인질환 및 발병위험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것은 모순된 판단임.
- 1심은 설사 심장마비 발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 해도,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기여도가 적다고 보았는데, 부적절한 판단임.
- 1심은 12월 심장마비 발생 전까지 20일 중 11일을 근무하고 9일 휴무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봄. 격일제 운전 근무에서 쉰 날을 '휴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1심에서는 2년 넘는 버스 운전경력에 대해 충분히 적응,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고 봄.

4) 취소의 주요 근거

- 피재자의 심정지 원인을 심근경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함. 장시간 노동, 휴식 부족 등은 심근경색 혹은 다른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4.0	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9372
4()	2심	
	3심	

〈사건요지〉봉사센터 사무국장인 노동자가 사건 3개월 전부터 대규모 행사 진행, 직원의 연이은 퇴직, 센터 쉼터 마련 공사 등으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만성과로와 단기간업무상 부담 증가가 동시에 해당하여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 39세 남성, 2012.2.10 점심 식사 무렵 흉통 발생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퇴근 후 19:50 경 가슴통증 호소하며 쓰러져 21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질판위는 ① 사망 전 3 개월 내에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나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② 사인 역시 확진이 아닌 추정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불승인후 재심사 청구 기각, 이후 행정법원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2014년 다시 산재보상 청구 후 불승인.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C센터의 과장으로 각종 행사 기획과 진행 담당.
- 2개월 전인 2011.11 대규모 행사 진행,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준비. 결과 보고서가 2011. 12.22 마무리. 이 중 자원봉사자 1만 7천명 공제외 가입 업무. 같은 시기에 센터 쉼터 마련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공사가 지체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음.
- 발생 1달 전 2주 가량 공사장 감독 때문에 아침에 문 열어주기 위해 일찍 출근, 주말 출근.
- 발생 2개월 전부터 계약직 직원 퇴직, 사무국장 퇴직, 소장 퇴직 예정되어 있어 업무 책임 수준이 상승함. 2012, 2 중 결산 및 예산 업무도 예정되어 있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초과근무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됨. 판결에 서는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근무 시간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함.
- 노동부 고시는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 판결임

4) 취소의 주요 근거

- 초과근무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동료직원 및 공사 수행 업체 직원들의 진술과,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늘어난 점으로 보아 과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4	Ļ	1

1심	청주지법 2013 구합 364
2심	대전고법(청주) 2014누 5713
3심	

〈사건요지〉일용직 근로자로 최고기온 36.4도인 날 공사현장에서 4시간 반 일한 후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병이 자연적 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함.

1) 사건개요

- 2012. 8. 6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신축공사 현장에서 8시경부터 작업하던 중, 12:30 경 어지럼증과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받음. ①출역하여 2시간 작업 후 발병한 점으로 보아 뚜렷한 업무 과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입사 전일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으므로 기존 질환의 악화에 따른 발병으로 보아 불승인. 심사, 재심사 청구 모두 기각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공사현장에서 70kg에 달하는 철강자재를 재단, 운반, 용접, 슬러그 제거 등의 작업을 수 행함.
- 당시 최고기온 36.4도, 최저기온 26도. 2012. 7.23이 마지막 작업이었고, 폭염주의보로 인해 1주일 정도 일을 하지 않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사건 발생 전날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던 중 왼쪽 위약 발생하여 30분 지속, 이후 회복됨. 이를 전조증상으로 볼 것인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볼 것인가.
- 그늘막 설치, 소금 비치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름.

4) 취소의 주요 근거

- 업무 자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에 해당하였다고 봄. 또, 피재자에게 다른 위험 요인이 없으며, 여러 의학적 소견이 높은 기온과 심한 일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

1	7
	Z

1심	청주지법 2013 구합 10293
2심	대전고법(청주) 2015 누 10071
3심	

〈사건요지〉식품회사 창립멤버로 경리업무를 5년 6개월간 수행하던 노동자에서 발생한 뇌실내 출혈에 대해 평소 거래처 관리 등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최근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이 어려워 개인 돈을 빌려주는 등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런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함.

1) 사건개요

- 식품제조회사 사무직으로 경리업무를 5년 6개월간 수행하다, 2012. 12. 28 회식을 마치고 개인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뇌실내 출혈 발생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객관적인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주간 평균 5~7시간 초과근무, 발병 전 1주일은 13시간 정도 초과근무), 고혈압 기존력이 확인된다며 불승인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최근 매출 감소로 납품 업체로부터 독촉/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으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에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후에 천5백만원을 돌려받음.
-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연말 결산 준비를 하는데, 사무직원 5명 중 여직원 1명이 사직하여 업무량이 증가함.
- 이에 2012. 12. 17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음.
- 주 6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이나 1주일 평균 5~7시간, 발병 전 3개월 동안 1개월 평균 20~30시간 초과근무를 해 옴.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2009년부터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음.
- 왜소한 체격(157cm, 47kg)인 재해자가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 가 충분하지는 않아 보임.

4) 취소의 주요 근거

- 회사 창립멤버로 거래처 관리 등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최근 매출이 부진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개인 돈을 빌려주는 등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함.
-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함.

_	
	٦-

1심	전지법 2013 구단 100462
2심	대전고법 2014 누 10767
3심	대법원 2014두44021

〈사건요지〉 원룸 건축공사 현장소장에서 발생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처음 해보는 일에서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촉발시켰다고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 원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4 공사현장 2층에서 쓰러진 채로 발생하여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함.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임.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시간은 07:20~19:00까지로 추정하고, 근무기간 중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육체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발생했다고 보아 불승인함.

2) 피재자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원래 건축업 경력이 없던 피재자가 현장소장을 맡게 되어, 사망 전 3개월 동안 휴일이 6일 뿐임.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일을 하지 않는 때도 대기함. 고등법원에서는 건축일지에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6일 외의 날은 업무를 한 기간으로 인정.
- 이렇게 계산하였을 때, 4주간 1주 평균 70.8시간, 12주간 1주 평균 69.1시간 근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대로 휴무일을 더 늘려서 계산하더라도 1주간 56.4시간으로 60시간에 근접함.
- 건설공사 경험이 없이 현장소장직을 처음 맡아, 여러 문제와 갈등에 봉착하였으며 공기 압박도 있었음.
- 사망 전날 노동부에 가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1시간 30분) 받음.

3) 사건 특이 사항 및 쟁점

- 부검상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 심장 비대 등 허혈성 심장질환이 기저질환으로 있었고,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촉발시켰을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이므로 공기압박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1심 판단.
- 건축일지에 직접 일을 했다고 적지 않은 경우에도 대기 중이었을 것으로 짐작하여, 적극 적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함.

4) 취소의 주요 근거

-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으나,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촉발 시켰을 것으로 판단함. 직접 일하지 않았어도 대기 시간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음 하는 현장소장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을 것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전심				직업		상병명				٨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록	1심	2심	3심	절차	성별	나이	대분류	세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1	서울행법 2011구합 31246	서울고법 2014누 375	2014두 14686		남		서비스	: 휴게소경비	외상성경막 하출혈, 뇌 내출혈		0	고혈압(경미)	72시간/주	별도 없음	야간고정	기술없음	명절휴게소 손님 증가				특이사항 없 음		간질발작에 의한 의식소실과 외 상, 이후 뇌내 출혈, 야간노동에 의한 간질 악화
3	2012구합 10024	1811	2014두 14037		남		사무	핸드폰판매	뇌실질내출 혈		×	고혈압, 당 뇨	57시간/주	확인안됨	없음	기술없음	근무시간 늘 어남		실적달성압박				핸드폰 판매업무, 구정등이 있 어, 업무시간이 늘어남
4	서울행법 2012구합 13016	서울고법 2013누 20457			남	52	건설	현장시공기 술자	뇌경색		X	고혈압	77시간/주, 10일간	10일간 연 속근무없음		기술없음	업무량 과다	휴일근무		공사관련 갈 등			노동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음.
5	서울행법 2012구단 11051	서울고법 2014누 5240			남		손해보 험	대물담당	지주막하출 혈		Х	고지혈증	통상근무	확인안됨	없음	기술없음	업무량과다 8명에서 6명 으로 줄었음, 처리건수늘어 남						세미나1박2일음주후다음날지주막 하출혈 1심도패소였음.1박2일세미나가사 업주관리하라고추가인정함.
6	서울행법 2012구단 14098	서울고법 2014누 2982	2014두 13515		남			국민건강보 험공단	· 뇌내출혈		х	없음	확인안됨	확인안됨	없음	기술없음	4개월간 업 무량2배증가			보험징수업무 로 변경			민원인의 욕설상대
8	서울행법 2012구단 27629	서울고법 2014누 4629	2015두 1830		남		서울도 시철도 공사		뇌경색			만성뇌경동 맥협착 또 는 폐색증			3조2교대		입환작업 건 수가 증가 (근 무일 평균 11 월 2.2건, 12 월 4.7건)	l		고도의 주의 력이 필요한 업무		당일 추운날씨에 야간근무 : 최고 -3 최저 -12.4	1심: 입환업무는 평소에 수행하 던 작업이므로 건수가 늘었다고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판위: 만성적으 로 진행된 병변으로 인과관계인 정되지 않음.
9	서울행법 2013구합 50883	서울고법 2013누 48264	2014두 41619		남	62	광산업	장비조 종총 괄		미상	허혈성심장 질환과 말 라리아로 판 단				2조2교대 (주간 7:30-15:30, 야간 15:30-23:30), 사망이전 20 일간 야간조 근무					첫 국외근무, 낯선 환경			질판위에서는 말라리아는 사망 에 이를 정도의 원인이 아니며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10	서울행법 2013구합 7551	서울고법 2014누 41864	2014두 41664		남			영업관리팀 배선관리부 문 평사원	1		유 심장비 대,심근세포 비후 등				LI		5명이 하던 일을 약 1년 전부터 2-3명 이 하게 됨						2심에서는인원이감축된상황고려. 사망전날선적착오문제로인한스트 레스인정.젊은나이이며건강관리 해왔음을고려.
11	서울행법 2013구합 11352	서울고법 2014누 47039	2015두 38771		남	37	조경회 사 조 경업무	<u>:</u>		급성심장사		당뇨, 고혈 압					사망 무렵 추석 특수로 업무량 증가 하여 야근 및 휴일 근무함.						기저질환이 심하지 않았다? 젊 은 나이. 조경업무는 고된 작업 임. 예초작업을 하던 중 증상 발 생. 등을 고려함
12	서울행법 2013구합 13495	서울고법 2014누 51793	2015두 37655		남	26	통신설 비회사	AS, 자재 ! 관리, 설치, ! 이전, 보수 업무	. 지주막하 <u>출</u> 혈	사망		뇌동맥류					최근 일주일 업무량 증가 로 초과근무 19시간50분 (이 중 휴일근 무 10시간 30 분)			상사의 출근 독촉전화(오전 7시 20분경)를 받고 출근 준 비하던 중 쓰 러짐			2심에서는 일주일간 야근, 상사 의 언성높임과 출근독촉으로 서 두르다가 발생한점,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함

.....

		사건번호		전심				직업		상병명				٨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록	1심	2심	3심	절치		별 나이	대분	루 세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13	서울행법 2013구합 16425		2015 5 39521	심시 두 및 ㅈ 1 심시 기각	남	63	일반/ 약직 (서울 특별/ 강서- 시설: 리공 단)	차량 입해 지 고 관리 5 구 민원업무	기 등등, 조명	직접사인 패혈증, 중 간사인 : 흡 인성 폐렴, 선행사인 :	Х	없음	52-57시간/ 주6 (평일 5 일 8~9시간/ 일, 주말 중 1일 12시간/ 일)	기사가	평일 5일은 야간과 심야 를 2개월 주 기 교대(평일 야간은 17:00-익일	기술 안됨	재해당일정해 진근무시간보 다약1시간20 분정도빨리출 근하여넉가래 로주차장제설 작업을함.				당일 추운날 씨	당일 추운날씨: 영하 3.6도(체감온 도 영향 7.7도)	
15	서울행법 2013구합 19493	서울고법 2014누 68432			남	기술	<u>설</u> 티임	청소및분 수거	기 뇌출혈	뇌출혈		고혈압, 당 뇨, 척추협 ^호 증, 발목이 좋지 않아 다리를 절음	중세 00:00 17:00	식사 1시간	었음	기술 안됨	단풍구경 행락객 증가 입무량 증가(망인이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비수기때 대형봉지 2~3개/주, 성수기 대형봉지 10개/일), (유람선탑) ~ 2002년 9월 평균 154명/일~10월 평균 442명/일. 재해당일 873명)	증가		자발성뇌출혈 가능성이높고, 뇌출혈이발생 한후어느정도 시간경과후 CT촬영한 것으 로 추정		비오는 날씨	업무량 크게 증가로 과로와 스 트레스 누적, 고혈압 당뇨를 꾸 준히 치료. 근무지에서 업무 도 중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음에 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건 사업주의 관리소홀임. 무거운 쓰 레기 처리가 혈압 상승의 원인일 수 있고,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망인이 빗길에 미끄젔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16	서울행법 2013구합 22222	서울고법 2015누 35668		심시 및 지 심시 기각	남	52	영업각	제약회시 영업	급성 관성 동맥 증후 군		х	트삽입), 고	[45시간/주5+ 1 주말 골프, 를 등산(의사들 과)	식사 1시간	없음	기술 안됨				평소 주말에 의사들과 골프, 등산- 법인카드 계산	등산		근복 : 질병력, 과로 불인정, 주 말산행은 불가피한 업무 아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예측곤란 한 사건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육체적, 정신적 과부 하의 객관적 사실 확인안됨.
18	서울행법 2013구합 60422	서울고법 2014누 65822			남	43	건설인	걸 현장소징	지주막하출 혈		O (내인성 급사)	없음	51시간/주6+ 출퇴근 2.5 시간/일	2시간	없음	기술안됨	월15일약1시 간/일연장근로 (발병2달전까 지2달간)-농지 보상민원처리 및공사설명	- 일요일 격주 근무	민원처리 및 회사의 금전 손해 책임감	1	2건의 농민 민원(2일, 1일 전) 및 회사의 금전적 손해		근복은 선천성뇌혈관기형인뇌동 맥류의 자연경과로 봄

	사건년	번호		전심 .				직업		상병명				시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록 1	심 2	2심		절차 성	별니	ᆘ	내분류	세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19 2013		14누 2	2015두 40842			52 A	세탁업	세탁보조업 무(바닥에 앉아 세탁 된 수건을 개는 작업)	뇌내출혈			고혈압 (2007.1~200 8.1 약물복 용), 소아마 비	8:30-18:00	점심시간30 분화장실이 용시간 이외 휴게시간 6 8. 2011.3.9입사 이후 4월에 병가 4일 포 함하여 5일,5 월에 1일 휴 무. 그 외 에 는 쉬지 않 고 일했음.			발병 한달전 매출 감소로 업무량 감소			입사2개월째부 터매월급여지 연지급·매출감 소로인한고용 불안.발병20일 전부터 동료 근로자와의 갈 등 심화.		90평 작업장 내 선 풍기 2대. 세탁기 3대 아이롱기계 1대 가 동. 환기 상태 불량 무더움. 발병당일 회사 소재지 최고 기온은 31.3도, 작 업장은 외부온도보 다 3-4도 이상 높았다. 재해자의 높았다. 재해자의 지가 별 도움이 되 지 않았음.	
20 2013		14누 2	2015두 49269			53 <u>2</u>	기들면 합공정 및 부	원자재 투 입 및 잔량 소요량 감 시, 설비 이 상 유무 확 인, 전체 공 정확인 업 무	뇌출혈			을 복용할만 큼 혈압이 높지 않았 음), 고지혈	부터 2교대	간1시간(2식) 외에는정해 진휴게시간 없음. 월2일휴무사	3교대근무(긴혹 2교대)히 다가 2013.5.4 이후 2교대로		발병전 한국 전력공사의 납품기일 (5.31)에 맞추기 위해 업무 량/시간 증가.	항상 돌아다	숙련된 기능 공으로 두가 지 공정에 대해 작업과 품질관리(감 독)를 동시에 수행했음 육 체적 정신적 피로.	두가지공정을 동시에수행할 수있는유일한 작업자였음. 불량품방지를 위해작업중항 상긴장. 납품기일에맞 추기위해정신 적부담.		넓은 작업장을 돌 아 다니며 작업.	1심:고혈압,고지혈증,담배,술등위 험인자->자연경롸에의한출혈가능 성높고,치료나관리가이루어지지 않았음. 납품기일이후이틀휴무일후회사야 유회(발병전날).
1 21 1	^{4구압} 596 201	을고법 15누 9202			i :	39	품질관 리및영 업관리		뇌간부출혈 (사망)			(2012.12.2 검진시 170/120, 치 료받은 기록	근무. 발병 전주 43시간 21분 근무.	입사후 마주 토요일어 출근했고, 일 요일에도 출근 하기도했고(회사측) 대통령선거	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지 만, 망인은 '입사후 평일			품질관리팀직 원은4->5명으 로증가했으나 영업관리팀은 망인 1명뿐이 었음.	l	회사 입사전에 는 영업관리업 무 경험이 없 음. 입사 후 12 월동안 인수 인계받고 1.1일 부터는 망인이 혼자 영업관리 업무 수행.			전직장에서 8.31일까지 근무하였 고 3개월 후 입사와 동시에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가 사망전까지 지속됨. (급격 한 생활환경의 변화)
22 2014	:행법 서울 4구단 201 732 371				1	53 4	중공업 협력업 체 관 리		뇌경색,우측 편마비,실어 중			없음	발병전1주59 시간21분,발 병전4주간60 시간,발병전 12주간57시 간50분.	주5일근무이 나 2013.1 월부터 5월 까지 월별 평균 휴일근 무 일수는			발주자와 협 력업체 사이 를 조율하느 라 업무량 증 가		작하는 대규 모 발주로 감리인 400여 명을 파견히 여 높은 수준 의 품질을 요 구 (일반 바	1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업무시 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와 협력업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협 력업체로의 출퇴근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 당하지않고 일부를 업무시간으로 인정

.....

		사건번호		전심			직	업		상병명				시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록	1심	2심	3심	절차	성별니	에대는	분류 시	네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24	창원지법 2011구단 2140	부산고법 9창 원)2013 누577	2014두 13874			비가 업 중 교 오 약 러 조	제조 ^전 및 무 열 무 한기 관 당 점 정 보 기 관 당 점 정 보 기 관 당 점 정 보 수	'용선 등미	편마비, 자 발성뇌출혈			2년 전 정 상	주당51시간 20분. 발병1주내14 시간30분연 장근무. 발병1개월전 44시간30 분,2개월전42 시간30분,3개 월전64시간 의연장근무.		발병 전 3 개월간 토요 일, 일요일 합계 26일 중 23일 휴 무.					4가지 프로젝 트(p171)가 중 첩되어 진행되 었고, 입고되는 자재가 부족함 에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상사와 다투기 도 하는 등 스 트레스.			질판위: 발병 전일 휴무했고, 뇌 출혈 상태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5	창원지법 2012구단 1519	(상	2014두 11779		남 5	, 공	ᅫ하	도요저고	직접 사인 : 뇌부종 및 뇌탈출, 중 간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			2년 전 안 면마비, 16mm의 동 맥류	발병전2개월 간각65시 간,67시간의 초과근무, 1주전20시간 초과근무에 이틀특근							업체 내 유일 한 자동용접공 으로 발병 전 납품불량 책임 을 지고 자격 박탈, 이후 자 격을 재취득한 뒤 불량 발생 에 대해 스트 레스			
28	창원지법 2013구단 827	부산고법 (창원 2014누 11116		심사 기각	남 4	물 샤 6 제	지 및 작, 원 기 자 제의	재 구입 조달, 직 관리, 하 보수관리 업무	뇌경색			없음		발병 1개월 이내 휴무일 없이 근무			공사 마감으 로 발병 10일 전부터 사업 장 인근 직원 숙소에서 숙 식하며 근무		공사 마감 시한이 임박				노동시간(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출근대장 등 근무시간을 산정 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미상
29	창원지법 2013구단 10091	1 (상 1		심사- 재심 사 기각	남 5	<i>1</i> I I	류회	송기사(트 레일러로 선기자재 운송)		사인미상	실시하지 않음	없음	한달 평균 21.5일 근무, 하루 평균 2~3회 화물 운송		에 주로 운 송(1~6시), 주간은 2~4	서 숙식하 면서 상시대 기 하다가 수시로 운송	사망 전날 5 회의 화물 운 송, 사망 무렵 다른 운송기 : 사들이 그만 둬 업무 증가			평소와는 다 른 새로운 장 거리 경로 운 송으로 작업 환경 변화			최초신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라고 기각, 재심사청구시 부 검안해 사인미상으로 기각 1심판결도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기각
30	대구지법 2014구단 10290			없음	남 5	3	전	'삭기 운 기사, 현 방팀장 겸 임	급성 심근 경색			이상지질혈 중	발병전1주일 주당 69.3시 간, 12주동안 주당 61.1시 간.	2개월간 휴 무일이 7일			발병 전 2개 월 동안 출하 량이 급격히 증가		현장팀장으로 팀원들이 휴 일-연장근무 를 거부하면 혼자 작업하 기도함. 주문물량과 납기를 맞추 는 것이 큰 책임.	장비고장으로 심한 질책 받 은 뒤에는 장 비 수리작업까 지 담당(무거운 부품 옮기기 등 포함)			공단 자문의는 심장혈관의 퇴행 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

		사건번호		전심				직업		상병명				시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록	1심	2심	3심	절차	성별	나이	대분류	세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31	대구지법 2014구단 743	대구고법 2015누 5321		불명	남	40	생명보 험사	부지점장	심정지			고혈압 이상지질혈 중 (심각한수준 아니라고봄))	12:00~13:00 18:00~20:00	が行工る		발병3개월전 부터급증 (2~3배) (담보대출건수 및접수금액으 로산출함)	정해진시간내 업무처리방식 으로노동강도 업무 4월부터보조 직원일찍퇴근 하면서업무증 가	대출신청처리 대출서류검토 등정신적책임 업무	비선호부서 전환(1년근무후 타보직전환)	5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업무스트레스 교감신경 항진 및 심근경색 유발 및 업무전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만성적 직무 스트레스 심근경색 발병 등의견
32	수원지법 2012구단 1031	서울고법 2013누 19716		불명	남	46	제조	금형설계 제작	중대뇌동맥 경색 온경동맥- 내경동맥협 착			음주(1주2~3 회소주1병) 흡연(1갑) 고혈압 (168/98) 고지혈증(중 성지방수치 204)	발병전13주 740시간48분 으로명시함), (주평균64시 간) 육체적과로 인정					금형설계업무 이외 금형생 산관리 업무 담당	금형설계업무 자체를 정신 적 으로 상당 한 무담업무 로 인정		일요일특근과 정에서쓰러짐		피고 자문의사도 발병에 영향을 인정한 사안을 판단의 근거로 제 시함. 기저질환 있었으나, 입사후 2년 정상근무 및 상병으로 치료 받은 바 없으므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 스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33	서울행정 2012구합 13832	서울고법 2013누 26677	2014두 13652	심사 청구 제기	남	45	조경	조경반장	소뇌출혈 뇌연수마비			흡연(반갑) 고혈압 (입사당시에 는고혈압이 나최근에는 고혈압진단 이아니라함) 고지혈증 심장스탠트 삽입시술	근무시간 07:00~17:00 26일중11일 은 2~4시간 추가근무.	17:00~19:00 26일연속근 므로하므가					연장된 공사 기간으로 인 한 스트레스			외딴섬에서근무하 면서숙박및식사의 문제에어려움 우천과 좋지 않은 작업환경	진료기록 감정의가 기저고혈압과 아스피린 복용과 더불어업무상과 로나 스트레스가 악영향을 끼쳤 을 가능성 인정 육체적 과로 상황에 대한 고려 및 스텐트 삽입술로 인해 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중요하게 보아 판단함
34	서울행정 2012구단 29274	서울고법 2014누 8126		심사 청구 제기	남			영업직	경련(발작) 대사성뇌병 증 고혈압성뇌 병증 뇌경색 급성신부전			고혈압 (일상생활에 서큰불편을 느끼지않아 별다른처치 를하지않음)	발병1개월전 부터 간혈 적 야근 및 휴일재택 근 무				발병1개월전 부터 신규거 래처발굴과 홈페이지 제 작업무 추가			연구직에서 영업직으로 업 무 이직한지 6 개월 여 기간		심적부담으로 병 원 내원 후 복귀하 여 근무 중 발생	진료기록감정의가 심한질책이 스트레스가 되어 악화인자 또는 촉발인자 작용가능성 인정함
35	서울행정 2013구합 55680	서울고법 2014누 42973	2015두 45120	재심 사청 구	남		제조업 (만도)	조립업무	뇌내출혈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기초질환이 없다고봄 그외추간판 탈출증이있 었는데,근무 시간내내서 서일하는것 이과중한업 무로평가됨	재해발생전3 일 연속근 무(주간,휴일 주간,야간)		주야2교대업 무 (주간근무시2 시간,야간근 무시1시간초 과형태) (1심은7개월 여기간동안 교대근무시 스템에익숙 해졌을것으 로판단)		목표량이 할 당되는 조립 업무	수작업으로 집중력을 요 하는 조립업 무		발병 7개월여 전부터 새로운 조립업무담당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 스트레 스가 뇌출혈의 주 축발요인이며,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 주기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 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 다고 회신함

.....

		사건번호		전	심				직업		상병명				시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특	1심	2심	3심		1.41	별L	나이	내분류	세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36	서울행 ² 2013구 ² 21755		2014	두 청 22 (김					버스운전	급성심근경 색(부검서)	미상	부검시행	본태성고혈 압(사망1년6 개월전 110/80진단) 당뇨(투약중) (평소적절히 관리한것으 로판단)	시가 시마위	중간에 차량 배차운행 등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불 인정	, , , ,		사망5주전기 존업무이외주 말관공버스업 무추가 (사망5주전2 일휴무)					대기실의 환경이 휴식하기 좋은 편 이 아니였음	진료기록감정의는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급성심근 경색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회신 함
37	법원	성 서울고등 법원 ¹ 2014 누 9 55535		재	사, 심 사 각	=			아파트 경 비원	지주막하출 혈 및 뇌 내출혈		안 함	진단	발병 전 4 주간 238시 간 근무(주당 59.5시간)		24시간 맞 교대	야간 근무 중 5시간 수 면		410세대 아 파트 를 2명 이 2교대, 격 일제로 관리		1년에 2번 하는 제초작업을 2일 전 수행 (5 시간), 당일도 수행 후 야간 근무 중 발병		휴게공간주변환경 열악 제초작업 당시 습 도가 높고 비교적 더운 날씨(최고기온 23.8도)	2심에서승소 6년 근무
38	법원	성 서울고등 법원 ¹ 2014 누 1 67767			_ [₫.	- 1	의료용 뚬 생 산	생산과장 (관리직)	심실빈맥		안 함	3년 전 협 심증, 심근경 색	발병 전 12 주 동안 평 균 62.3시간 (사망전 1주 평균 64시간)				홀로 사무직 + 주로 여성 생산직 노동 자들이라서 힘든 일 많이 한 점		1달전한국식 약청인증심사 준비 야간잔업후승 합차로직원들 퇴근시킴	사망직전2개월 여동안공장이 전및시운전등 스트레스, 물량차질			5년근무 고콜레스테롤혈증 호전중이었던 등 과거력에도 불구하고 건강관 리를 안정적으로 해왔다고평가
39	법원	성 서울고등 법원 ¹ 2014 누 7 57098			_ =	₫ .	40		버스운전기 사	심근경색 (추정) - 주묘 쟁점		불가능	고혈압	운전시간:하 루8회운행*1 시간40분~2 시간,하루17 시간(야간운 전포함) 최종12주평 균68시간42 분	(사망선달, 전전달에 3 일 연속근무 4회씩, 사망	격일제근무,			36km, 100개 정류장					2심승소 마을버스1년,이회사 중형버스1년, 대형버스 6개월 근무때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7개 월후 폐렴으로 사망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병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라는 내 과 전문의 진료기록 감정(vs흡연)
40	서울행? 법원 2014 ⁻ 합 693?	1		사·송 하 간 고 다 신 [:] 불 인	심 -소 각 (기 도), 시 청-	=	- 1	C 봉 사 센 터	사무국장	급성심근경 색		안 함		발생 1달 전 2주 가량 공 사장 감독 때문에 아침 에 문열어주 거나 주말 출근				2개월전대규 모행사진행(시 건발생3개월 전부터준비) 자원봉사자1 만7천여명공 제회가입업무 (2,3개월전) 같은시기센터 쉼터마련공사 추진,지체되어 스트레스		발생 2개월 전부터 계약 직 직원 퇴직, 사무국장 퇴 직, 소장 퇴직 예정되어 업 무 책임 수준 이 상승				2년9개월근무 초과근무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나,동료직원 및 공사수행 업체 직원들의 진술과,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늘어난 점 고려. 만성과로와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 노동부고시는 예시 규정이라고 봄.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 과제....

		사건번호		전심				직업		상병명				시	간			시간 외	질적 측면				
목	1심	2심	3심	절차	성별	나이	대분류	세부직종	상병명	사인미상	부검여부	기존질병	노동시간	휴무시간	교대, 야간노동	수면시간	업무량	노동강도	책임	기타	급성스트레스	물리적 환경	참고사항
4		대전고법 청주2014 누5713		심사, 재심 사 기각			건설업	일용직	뇌경색		생존	전날 전조증 상 여부에대 해 의사들 이견. 흡연외 다른 기저질환없 음						70kg 철강 자재 재단, 운 반				폭염주의보. 당일오 전 4시간 30분 일 하다 쓰러짐 그늘막, 소금 비치 여부에 대한 엇갈 린 진술.	이 공사장 근무 첫 날
42		대전고법 청주2015 누10071		-			식품제 조회사	사무직	뇌실내출혈			고혈압 진 단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 음					사무직원5명 중여직원1명 이사직함에따 라업무량증가,	도 항의 전화 받는 등 시달 려 사거 반색	품말수빛내금 결제등일상업 무스트레스평 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회사에 개인 돈 3천만 원 빌려주었다 가 받지 못하 고 있던 점			5년6개월근무 왜소한체격인재해자에게피로가더 누적됐을가능성.
43	대전지법 2013 구 단 100462	비내서 한번	2014 \f 44021	<u>-</u>			건설업	현장소장	급성심근경 색		실시	부검상 고 도의 관상동 맥경화, 심장 비대 등 허 혈성 심장질 환이 기저질 환으로 있었 음	하루10.5시간 발병 전 12 주평균 56.4~69.5시 간	3개월 동안 6억 쉰					건설공사 경 험이 없이 현 장 소장직을 처음 맡아,여 러 문제와 갈 등 봉착. 공기압박.		사망 전날 노동부에 가 서 안전모 미 지급과 관련 하여 피의자 신문(1시간 30분)		근로자는 공기압박이 심하지않을 것이라는 1심판단. 심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기저질 환인 때,trigger(유인)로업 무요인 인정 사례 건축일지에 직접 일을 했다고 적 지 않은 경우에도 대기중이었을 것으로 짐작, 노동시간 산정.